

2017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2018. 2.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 과제제안 : 김혜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 책임연구원 : 윤 혁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 연구원 : 신난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보조연구원 : 이윤미 (홍사단교육운동본부 부장)
- 조사연구원 : 이명옥 (청소년인생설계학교 사무국장)
이록빈 (경기과천시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문상담사)
- 자문위원 :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고경희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승미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센터장)

(요약문)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윤혁(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사회는 이미 한국인 25명 중 한 명은 외국인주민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던 초기에 주로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관점에서 시작하여, 교육적인 권리보장 및 국민적인 다문화수용성 제고 차원의 접근으로 발전하며 ‘강한 다문화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후 투-트랙(two-track)정책을 펼쳐왔다. 즉, 이주노동자가 단기사용 후 용도 폐기되는 정책의 대상이었다면, 다문화가족은 한국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화주의’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와 2000년대 중반의 ‘고용허가제도’가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 보장 등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한국민화 되지 않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1세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플랜’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과 맞물려, 청소년의 성장기 요체는 ‘시민_되기’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생활 복지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시민_되기), 그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과 함께 연구 방법을 소개하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 두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탐구 및 정책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와 면담을 이용한 심층 면접 및 서면(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 등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인 검토를 거쳐 (재)정의하고, 이에 터하여, 새로운 시민사회;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의 관점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다문화정책 동향 및 해외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며, 한국적 시사점을 구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정리한 후, 이와 연동된 서울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시와 교육청의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관련 기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구안하였다.

4장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다문화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면담하면서 이들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생활 세계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한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병행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이들의 생활세계가 다문화정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제언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공공적 책무성의 강화와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 근거 정비 및 지원체제 개선과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 찾기,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의 시작으로 교육 ODA 체험활동 제안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확대 및 전문상담사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다문화수용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재)정의와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 및 그를 위한 사회적 참여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한 후, 그에 터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및 실태 등을 종합조사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을 현장 실태 분석한 후, 대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2) 또한, 한국 사회보다 앞서서 다문화 이민사회를 경험한 해외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동향을 문헌 분석한 후, 몇몇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훑아보면서 한국적 시사점을 구하였다.

3)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한 후,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및 주요 기관 시설의 종사자들과의 면담조사 및 서면 인터뷰,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4)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면 대 면’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과 학교 밖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 수집 경로 및 장애요소, 대안적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동안 중앙정부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다문화가족정책의 일부, 또는 여성가족복지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복지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정책 역시 중앙정부(특히 여성가족부)의 정책 실행 경로로써 작동하였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함으로써 전국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한국 내에서의 실존 자체가 다양하며, 그 내부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연동되며,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가족제도 및 교육제도의 현실’과 ‘아직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정의

다문화청소년은 이들이 국적을 취득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연령과 실제 거주 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다문화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계를 나이와 거주라는 조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으로 한국사회로 들어온 다양한 이주민을 '지역 거주'라는 조건으로 범주화하여 외국인주민, 이주민으로 호명하는 흐름과도 맞닿는다. 즉 이들은 국가 경계를 넘는 이주를 거치며 한국사회의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세계를 영위하는 사람, 주민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문화청소년은 곧 그러한 배경을 갖는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범주를 주민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다문화 개념은 시민-이주민, 시민-청소년 관점으로 재정의하게 된다. 즉 새로운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바로 시민-다문화청소년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시민-청소년 관점은 청소년이 청소년기 동안에도 시민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점을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한국사회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민주적 원리와 제도가 작동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거나 혹은 살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부모 혹은 결혼이민자 부모를 둔 13세~18세 연령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과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의 관점

한국사회는 다문화 이민사회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각 개인은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에 '깨어 있는' 행위 주체로서 현 사회의 제반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깨어 있는' 시민으로, 민주공화국의 공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 문해력'을 갖춘, '깨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요청된다.

다문화 이민사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과업이 무엇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할 영역이 다문화를 포함한 청소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민주시민 생활양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은 자기 존재성을 구축해 온 삶의 조건과 힘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정치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청소년정책은 바로 정치적 문해력 함양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세계적 동향

혼란을 거듭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범 사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선, 인종 분리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중심으로, 소수민족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소수 다문화가족 또는 소수의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 사실상 분리 복지정책에서 모든 한국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는 일회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공교육에서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실시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능력 자격코스를 개설하여 교수법 및 현장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등 다른 다문화국가들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로서,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의 최우선 요건으로 다문화청소년 관련 교수진(교사, 강사 등)의 전문성 함양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교수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통합과정 11가지 정치교육 주요 논제는 1)민족주의 2)규칙과 법 3)아동의 권리: 인권 4)생산과 노동 5) 이해갈등: 새로운 일자리 6)다원성 7)정의와 타자에 관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철학 8)전쟁과 평화 9)공통적 합의와 변혁 10)미디어와 정치 11)디지털 영화 제작 등인데, 이는 독일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교육과정 전반을 재검토하며, 초중등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은 학교의 정규 수업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배우기도 하며, 지역사회(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타문화를 경험한다. 아울러, 이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Heritage Language Program(HIP)'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문화를 보전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며, 어린이의 언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다문화청소년(교육)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Ⅲ.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및 지원정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지원정책은 주로 결혼이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학생의 시민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다문화청소년들 성장 발달을 고려한 연속적이고, 중단기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서울시나 교육청의 현재적인 인력 구조로는 다기·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기관별, 또는 기관내부의 각 부처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미흡함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편차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다문화의 층위와 계층이 넓어짐에 따르는 왕따, 소외 등 학교생활 문제부터, 나아가 학교 밖 생활세계와 사회참여활동 및 각자의 적성에 근거한 진로(설계)교육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학업 연계 관련한 공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기 중 편입이 어려워 각 지역 지원센터로 연계해주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각지대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복지망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지만, 일부 대기업과 기관들은 청소년의 욕구와 바람을 매우 경쟁적 방식으로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우수 인재를 특별하게 선발하는 것에 집중하며, 시혜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사실, 민간 대기업들의 이러한 ‘다문화 우수학생 선발과 특별교육’은 승자독식의 강고한 한국 경쟁교육 현실에서 또 다른 방식의 특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특출한 다문화청소년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열패감을 주기도 하며, 게다가 일반 한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는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적 책무성 회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문화 관련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도 좋은 복지 사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민과 관, 관과 대학 및 기업들의 협력적 다문화정책사업 운영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다문화청소년·학생지원정책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 4% 외국인주민, 또는 1%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96%, 100% 모든 한국인, 청소년들을 위한 '모두'의 다문화교육으로 대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은 다문화청소년·학생의 '시민_되기'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용성 교육을 공식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들 및 미취학 청소년을 포함한 학업중단 다문화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의 범위 확대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학생 중복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학생 입장에서 볼 때 특정한 이해와 요구를 어느 공공기관과 상담 확인해야 하는 지 헷갈리며, 현장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만 중복된 사업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거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차원 및 25개 자치구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 수준별 통합적 운영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경우 장학사 1명과 다문화 코디네이터 3명이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교육, 정보제공, 홍보, 기타 다문화가정상담 및 (주로 중도입국) 청소년교육을 진행하기에 벅찬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은 이들이 보편적 시민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시민으로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편적인 청소년정책과 제도로써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서울시의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의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시민-되기를 포함하여, 우리 시대 보편적인 청소년의 성장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V.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성과 문제 상황을 이들의 이민 배경 부모, 혹은 이민자 당사자인 자신의 조건으로 귀속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것은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이 한국사회 일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양상을 따라 잘 이루어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청소년 양자 모두에게서 문제의 진단이 올바르게 맞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이 건강하고 활발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적 조건으로 자신을 구별 짓고 가시화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저항감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적 조건에 함축된 부정적 의미와 낙인에 대하여 부조리함을 느낀다.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주배경 부모나 상이한 문화적 맥락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 안팎에서 행복과 한국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과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 청소년의 양육과 지지에 있어서 유사한 결핍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이들이 한국배경의 청소년인가, 이주배경의 청소년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총체적 조건이 어떤 상태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에 의하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고를 치는' 일반 청소년보다 더 조용하고 규칙을 따르는 생활을 하였다. 비록 드러내고 사고를 치지는 않지만, 이들은 교과목에 관한 흥미나 성취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사실상 수업을 통해 학교생활의 의미를 느끼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학교생활은 거의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혹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배회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주배경이라는 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일을 나가느라 자신을 섬세하게 돌볼 수 없다는 점이 일으키는 아픔과 위축이 깊이 자리해 있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고통과 비애가 깊이 스며져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에 항의도 요구도 하지 못한 채 홀로 텅 빈 시간을 견디며 감각적인 소비와 즐거움으로 불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웠다. 학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뇌와 불안에 대하여 교사의 이해나 지지를 거의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친구들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지지를 얻고 있었다.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에 의하면, 아직 아르바이트가 어려운 중학교 이하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거나 근처 편의점 혹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으며 놀았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이나 채팅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대부분 일주일에 2~3일을 하루 4~5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활동 범위는 주중에는 학교, 집, 아르바이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은 젊은 층이 많이 가는 거리로 놀러나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가정생활을 분석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부모님도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집에서 이들은 혼자 채팅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었던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과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소망이나 필요를 금지하거나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부모님의 생각과 희망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 스스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4)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와 자신의 이주배경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데에는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와 양육과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님이 일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 특히 부모님 모국의 이주배경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활동에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과 부모님의 '특별한' 이주배경 조건을 '예민하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생활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해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제까지 힘들게 구축한 네트워크와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또래 일반 청소년이 자신의 이주배경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에서 아예 벗어나려는 마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의 이주배경에 관한 감정이 양가적이어서 한국사회가 부모님과 자신의 이주배경에 대하여 부정적 낙인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축과 수동적 저항감이 내재해 있었다.

5)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부모나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인하여 본원적으로 다중적이며 혼종적인 특성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안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조건에 담긴 다중적이며 혼종적인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부모의 섬세한 배려와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혼란과 불안을 다중적이며 통합적인 정체성으로 내면화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단일문화 맥락에서 단일 정체성이 일으키는 효과 못지않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6) 다문화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의 경우도 사회참여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학교 밖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을이나 지역 거리에서 하는 환경미화 활동, 미래에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체험활동 등을 사회참여활동으로 추정하였다. 부분적으로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내적인 충만함과 자부심이 향상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자신과 부모의 이주배경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이주배경 특성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식을 생성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7)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는 부모의 세밀한 지원이나 양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의 인식과 이해가 선한 동기의 나눔과 자기 헌신의 차원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활동은 본격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다문화청소년과 부모들은 청소년의 투표권 문제나 인권 조례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다.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자기의 생각을 주제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하거나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기 힘들어 했다. 정치적 견해와 행동에 대하여 한국 일반 청소년이나 다문화청소년 모두 부분적이며 정확하지 않은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통념화된 사고와 지식이 이들에게 그대로 내면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 상처와 고뇌로 인하여 정치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다룰 여유와 힘이 부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생성해내는 정치 문화적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사회참여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작업이 다문화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의식과 내면세계를 억압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함께 다루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1. '모두'를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공공적 책무성의 강화

한국 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 또한 없다. 서울시의 경우, 대한민국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축소판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미 9개의 자치구가 다문화지역공동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의 다인종,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4%의 다문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단일민족의 신화에 젖어 있는 한국인들에게 단편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다문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이제는 나머지 96%, 나아가 '모두'를 위한 정책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은 복지적 맥락에서 타당하나,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적 관점은 생략되거나 누락된 측면이 있다. 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평생교육담당관의 밀착된 협력체계(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 성장발달지원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복지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적 관점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성장, 시민_되기를 위한 지원체계 공고화가 절실한 시대에 이미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다문화(청소년) 혁신 정책은 최우선적인 과제로 1)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에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추진 운영할 것과 2) 서울시와 교육청 공무원, 교사, 학부모, 일반 학생들을 '모두'를 위한 다인종,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과 이에 따른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며 3) 다문화(청소년)교육 관련 전담 공무조직과 전문적 인력(이중 언어강사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등)의 양성과 확대 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우선 과제 수행을 위해 서울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근거 정비 및 지원체계 개선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외국인 주민 40만 시대에 맞추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울시의 관련 조례들 및 이를 근거로 하는 지원체계들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관련 조례의 경우 통합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각 표준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특성,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선주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다문화공동체로 진입한 자치구(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들에 대해서 '다문화지역공동체'로 공식 규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전체로 보아도 다문화 도시로의 전환이 그리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를 다문화사회 표준 도시로 선언하고, 글로벌 상생과 협력의 시민공동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계시민도시 서울특별시>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 다문화지역공동체 9개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와 연동하여 추진하되, 교육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구안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시는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차원에서의 통합적 운영을 즉각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2013년 제정)은 다문화수용성 교육의 전면화와 다문화청소년·학생의 교육적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규정으로 검토한 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무엇보다 우선,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을 찾고 보자!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 중 취학 연령 청소년들(행정안전부)과 실제 공교육에 진입한 초·중·고 재학생(교육부)을 비교해 보면, 132명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 교육과정 상의 학령기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편차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시와 교육청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결의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적 각오로,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보편적인 일반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ODA 체험과 봉사학습부터 시작하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 ODA 및 이와 연동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은 특유의 고유한 다문화적 특성으로, 공적원조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시적이고 거창한 미래 리더로서의 ODA 전문가 양성보다는 우선 이들의 모 또는 부의 고향 나라에 대한 교육적 ODA 사업을 소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해야 하며, 그 가운데 위 다문화청소년 처럼 일반 청소년들과 여럿이 어울려 동아리를 만들며, 동네에서의 자원봉사와 엄마 고향나라의 소박한 교육적 ODA 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플랜,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들에서 즉각 시행해도 좋을 프로그램이다.

5.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과 전문 상담사 지원의 필요성

서울시의 가족체험주말농장이나 다양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들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시설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어우러지며 서로가 정서적 지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단한 생애사를 간직하고 있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하는 기관 및 상담사를 다문화청소년이 머무는 공간들마다 확대 배치해야 한다.

6. 서울 ‘자유시민대학’;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유시민대학 캠퍼스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시민대학은 대학연계 시민대학 28곳을 더하면 교육장소만 34곳에 이르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유시민대학의 교육 분야는 인문, 서울학, 민주시민, 문화예술 등 4개에서 사회경제, 환경생활, 미래 등을 더해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캠퍼스와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에서 다루는 강좌 수도 370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서울시민들의 ‘시민력’을 높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시민력 제고의 영역 확장의 측면에서, 급속하게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미 서울시 9개 자치구가 다문화지역공동체사회로 진입한 것을 고려하여, 서울 시민대학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기관, 시설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다문화 당사자들의 각각의 원거리 통학거리 및 각자가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들(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및 다양한 시민적 권리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울시민대학의 위상과 역할 및 교육과정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시민대학이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시민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서울시가 직면한 다인종, 다문화시대 이주민, 선주민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 통합 교육으로 ‘모든’ 시민들의 시민성 제고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 프로젝트 등을 일반 청소년과 어우러져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통합적 복지정책이 선별복지 차원의 지원을 느슨하게 해서 안 된다’고 제언하며, 본 연구는 서울시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패러다임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인가 라는 사회적 의제로 시민사회 공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공동체의 표준’으로, 뉴욕이나 파리의 다문화도시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21세기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혁신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기대한다.

목 차

I .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7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II . 이론적 배경	9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의	9
2. 다문화 이민사회로의 본격 진입과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 관점	11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세계적 동향	19
가. 다문화 정책의 세계적 동향	19
나. 다문화주의 정책유형별 구분 및 주요 해외 사례	20
1) 미국 사례	22
2) 독일 사례	24
3) 그 밖의 나라들 - 아일랜드 및 캐나다	26
다. 시사점	27
III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및 지원정책	30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30
가. 외국인주민 현황	30
나.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34
다.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40
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지원정책 현황	47
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47
1)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과 시설 현황	49
2)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시설 현황	59
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위탁 기관	63
4) 민간 기업의 다문화청소년 지원현황	64
3. 소결 및 시사점	65

IV.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 69

-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71
-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밖 생활 실태 분석 77
 - 가. 가정생활 - 부모관계 77
 - 나. 친구 관계 78
 - 다. 다문화청소년의 일주일 83
 - 라. 사회참여활동 실태 87
- 3. 시사점 94

V.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99

- 1. ‘모두를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공공적 책무성의 강화 100
- 2.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근거 정비 및 지원체계 개선 ... 101
- 3. 무엇보다 우선,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을 찾고 보자! 104
-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ODA 체험과 봉사학습부터 시작하자! 105
- 5.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과 전문 상담사 지원의 필요성 106
- 6. 서울시민대학;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다문화수용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 ... 107

참고문헌 111

- 부록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117
- 부록 2.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6
- 부록 3.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41
- 부록 4.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143
- 부록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145
- 부록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49
- 부록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151
- 부록 8. 세종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155
- 부록 9.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7

표 목차

〈표 II-1〉 다문화정책의 실시 수준에 따른 다문화주의 국가 분류	20
〈표 II-2〉 이민자정책 유형비교	21
〈표 III-1〉 시도별 외국인주민 총괄 현황	30
〈표 III-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31
〈표 III-3〉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	32
〈표 III-4〉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 : 외국인주민 수 기준 분류	33
〈표 III-5〉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34
〈표 III-6〉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 현황	35
〈표 III-7〉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 현황 연도별 추이	36
〈표 III-8〉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전국 현황	36
〈표 III-9〉 전국 다문화학생 현황	37
〈표 III-10〉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	38
〈표 III-11〉 다문화학생 유형별 현황	39
〈표 III-12〉 서울시 인구 현황	40
〈표 III-13〉 서울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증감 추이	40
〈표 III-14〉 전국 및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주민 현황	41
〈표 III-15〉 전국 및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주민 자녀 유형별 현황	42
〈표 III-16〉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	43
〈표 III-17〉 다문화 학생의 유형	44
〈표 III-18〉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	45
〈표 III-19〉 2017년 서울시 학교 급별/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45
〈표 III-20〉 서울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청 별 현황	46
〈표 III-21〉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예산 총괄	49
〈표 III-22〉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지원조례 현황	58
〈표 III-23〉 서울교육청 다문화정책학교 등 주요 사업	60
〈표 III-24〉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학생현황(2014-2017 현재)	62
〈표 III-25〉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자격종별 교사현황(2014-2017 현재)	63
〈표 III-26〉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졸업생 진로현황(2014-2017 현재) ..	63
〈표 IV-1〉 심층면접 참가자 소개	70
〈표 IV-2〉 심층면접 일정	71

그림 목차

〈그림 IV-1 은정의 일주일〉	72
〈그림 IV-2 미희의 일주일〉	73
〈그림 IV-3 대안교육센터의 일주일 시간표〉	74
〈그림 IV-4 정수의 일주일1	75
〈그림 IV-5 미경의 친구 관계	78
〈그림 IV-6 가은의 친구 관계	79
〈그림 IV-7 준형의 친구 관계	80
〈그림 IV-8 미경의 일주일	84
〈그림 IV-9 준형의 일주일	85
〈그림 IV-10 가은의 일주일	86
〈그림 IV-11 정수의 일주일	8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한국인 25명 중 한 명은 외국인주민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¹⁾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백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²⁾ 5,169.6만 명의 약 4% (204만9441명)를 차지했다. 또한 통계청은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가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외국인 거주자의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보고³⁾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의 증가 양상은 규모로는 단순기능 인력이, 증가율은 영주자격 외국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2016년 15만 2,374명으로 지난 15년 동안 약 6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의 누적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어느 단계까지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의 불균등 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인구의 초국가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 역

1)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통계를 국적, 체류자격별, 지역별 체류 현황으로 구분 집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11월 01일 기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통계)는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주민의 국적, 성, 유형별 현황과 국적 취득자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정보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고, 교육부는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4월 01일 기준)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원자료 및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실태조사 등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통계를 발표하며, 통계청은 국제이동통계, 외국인 및 귀화자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인구동향조사와 외국인의 취업, 실업 등 경제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고용조사를 발표한다. 그리고 통일부는 탈북민의 연도별 입국현황과 연령대별 현황 및 거주 지역별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 법무부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2016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전체 인구(51,696,216명)를 발표한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총인구’(51,269,554명)와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총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두 통계 편차는 426,662명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발표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인주민 통계들은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중앙정부 부처별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통계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일임을 밝혀 둔다. 중앙정부의 통합적 산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

3) ‘한국의 사회동향 2017: 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보고서 (통계청)

시 노동이주, 결혼이주, 탈북이주의 빠른 증가(김기영, 2017)로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본격 도래하고⁴⁾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⁵⁾이다. 하지만 다인종·다문화시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의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의 연구와 논의는 10여년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2006년 노무현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실태 조사’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책연구과제였던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전망과 과제’ 등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때의 연구 내용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뒤처지는 아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새터민 가정의 자녀; 탈락하는 아이들,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조영달, 2006)과 ‘단일문화에서 다문화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시민교육을 모색하는 것’(장인실, 2007) 등으로 이어졌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던 초기에 주로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관점에서 시작하여, 교육적인 권리보장 및 국민적인 다문화수용성 제고 차원의 접근으로 발전하며 ‘강한 다문화주의’⁶⁾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후 한국 정부는 다문화사회현상에 대해 투-트랙(two-track)정책을 펼쳐왔다. 즉, 이주노동자가 단기사용 후 용도 폐기되는 정책의 대상이었다면, 다문화가족은 한국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화주의’ 정책 대상(임선일, 2015)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와 2000년대 중반의 ‘고용허가제도’가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⁷⁾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 보장 등에 실패⁸⁾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4) 통계청은 2020년 국내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254만 명(총인구의 5%)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5)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12년 현재 15세 학생의 12%가 이주배경을 가진 것(OECD, 2015; 양승주 외, 2016. 김기영, 2017. 재인용)으로 세계적인 다인종, 다문화사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6) 강한 다문화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공존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소수자들의 불평등을 없애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다문화주의로, 캐나다, 호주 등의 다문화정책이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7) 1950년대 독일의 차별배제 모형을 말하는 것으로, 독일은 전후 재건에 필요한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초청하면서, 정착을 불허하는 차별배제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로 인하여 이른바 ‘손님노동자(Gastarbeiter)’라고 불린 이주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마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독일은 외국인 이주자들과 자녀들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통합과 귀환’의 이중적인 정책(임선일, 2015)을 사용했다.

8)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한국정부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최종권고는 30개 분야, 총71개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보호(여권압수관행예방, 구금 및 학대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비시민이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을 보장할 것과 부모의 법적상태, 출신국과 무관하게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출생,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보호책이 없음에 지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바탕으로, 이주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과 기본권 보장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한국민화 되지 않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의 연구와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임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이후 박근혜정부의 임기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1,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우수인재 확보가 실질적인 목적이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족결합금지 및 단속강화 정책을 펼치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인종주의와 혈통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동화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중에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과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의 경우,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새롭게 추가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종, 문화, 정체성 갈등 등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국 실질적인 동화주의의 강화 정책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주민들이 영주권과 귀화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귀화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이주민이 영주권과 귀화심사라는 이중심사를 통해 한국 구성원이 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영주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주민 당사자와 선주민 간에 논란이 되었다.

결국, 한국정부의 ‘손님노동자제도’에 토대를 둔 이주노동자정책과 인종주의 및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동화주의’ 강화 정책은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7.9%에서 중학교 92.3%, 고등학교 85.1%, 고등교육기관 49.3% 등으로 상급학교로 가면서 점차 감소(통계청, 2012)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중단율은 2010년 0.68%(215명)에서 2015년 0.85%(700명)로 상승(교육부, 교육통계연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다문화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역시 한국사회와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은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취학하지 못한 비율’과 ‘학업중단율’을 합산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이 어렵다. 다만, 미취학자와 학업중단자의 합계를 추산하여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이 대체로 한국인과 재혼

한 외국인과 동반 입국한 외국 출생 이주 청소년들로 짐작(류방란, 2012)할 뿐이다. 이는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도입국⁹⁾ 청소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혜숙, 2016)에 주목하며,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혁신하는 핵심 기조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사회 책임주체로서의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적인 청소년정책의 대상자로 다문화청소년의 위상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등 자유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평등권, 그리고 국적취득의 권리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등의 사회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지원을 ‘지원’이 아닌 ‘차별’의 코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김기영, 2017), 이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난과 차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⁰⁾.

결국, 우리 사회 다문화교육정책은 4%의 외국인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6%의 선주민인 일반 한국인과 청소년, 궁극적으로는 모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한국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개념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포함(설동훈, 2017)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일반 청소년들과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은 다인종,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시민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국가적, 공공적 책무성¹¹⁾이 있기 때문이다.

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1,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2,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 3,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4, 탈북 여성이 외국인과 사이에서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을 말한다. (2011)

10)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법무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17년)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분석하면서, 제1차 기본계획(2008~2012)에 대한 평가 중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反 외국인 정서 등장’을 한계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문화’를 대체할 용어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11) 청소년의 시민적 성장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은 ‘세계교육개혁’(심성보, 윤혁 외- GLOBAL EDUCATION REFORM’. 린다 달링-헤먼드 외- 역서, 살림터,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민영화 우선인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1세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플랜’¹²⁾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과 맞물려, 청소년의 성장기 요체는 ‘시민_되기’¹³⁾라는 관점으로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교육적 생활실태와 (학교 밖에서의) 사회적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적인 서울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참여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기획하던 단계에서 구상했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부 수정되었다. 이주결혼가정과 그 자녀들인 다문화청소년들을 표적 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면 대 면’ 심층면접으로 수정했으며, 이는 결혼이주민들의 출신국가별 특성과 다문화청소년들의 심한 낮가림 때문이었다. 물론, 연구 목적을 유지한 가운데, 면접 방식의 변경으로 면접 횟수는 더 늘어났고, 보다 세밀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가. 연구 내용

가. 공적 투자 강화인가’라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역사와 현재, 전망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국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우선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은 시장 기반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성장 편차가 있고, 공적 투자를 확대 강화하는 국가들은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시민적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12) 서울시는 2017년 11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김혜련 시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적인 청소년’, ‘협력적인 청소년’, ‘창의적인 청소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공정한 기회 부여’,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5년(2017-21)간 총 4,9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정책이다. 이 청소년 종합 지원정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여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희망’과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 및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현안 Blue Note (2015, vol4)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의 요체는 민주시민 되기이다’(김현철)를 다루며, 성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나와 나의 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따라서 성인기 이행은 ‘School to work’ 이 아니라 ‘Becoming a citizen’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 되기’의 실천적 의미를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devenir)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이는 삶의 현실성, 즉 고정되어 있는 어떤 본질이나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전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른 삶으로의 이행을 ‘되기(생성)’라 부르기로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생활 복지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시민_되기), 그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진은 다문화정책의 다양한 문제들, 가령 아직 근대화되지 못한 한국의 ‘가족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젠더’ 문제 및 다문화가족 내 여러 갈등적 상황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과 또한 이주노동의 한국적 실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본 연구진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매개 변수로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현황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세계 범주에 해당하는 학교와 지역사회(마을)에서의 생활동선 및 또래 관계를 조사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정보의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하였음을 밝혀 둔다.

1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과 함께 연구 방법을 소개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밝혀 두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탐구 및 정책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와 면담을 이용한 심층 면접 및 서면(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 등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인 검토를 거쳐 (재)정의하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시민사회; 다인종·다문화시대, 즉 다문화 이민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의 관점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다문화정책 동향 및 해외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며, 한국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정리한 후, 이와 연동된 서울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시와 교육청의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관련 기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및 시설,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다문화청소년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면담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생활 세계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병행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이들의 생활세계가 다문화사회정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제언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공공적 책무성의 강화와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 근거 정비 및 지원체제 개선과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 찾기,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의 시작으로 교육 ODA 체험활동

제안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확대 및 전문상담사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다문화수용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핵심 내용으로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모색을 담고 있다.

나. 연구 방법

1)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재)정의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 및 그를 위한 사회적 참여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한 후, 그에 더하여 관련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현장 실태 분석한 후, 정책 대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보다 앞서서 다문화 이민사회를 경험한 해외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동향을 문헌 분석한 후, 몇몇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3)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한 후,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및 주요 기관 시설의 종사자들과의 면담조사 및 서면 인터뷰, 그리고 연구 목적 달성의 필요에 따라 특정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4) 다문화가족¹⁴⁾ 및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면 대 면’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학교생활과 학교 밖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 수집 경로 및 장애요소, 대안적 요구사항을 직접 조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동안 중앙정부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다문화가족정책의 일부, 또는 여성가족복지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독자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영역 구축 없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정책 역시 중앙정부(특히 여성가족부)의 정책

14)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으로, 다문화청소년 인터뷰와 연동하여 다문화가족을 심층 면접하였다. 아울러 ‘다문화’라는 사회적 호명이 당사자들에게는 사회적 편견의 ‘낙인’으로 작용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반 (선주민) 한국 청소년들과 다문화 (이주민) 청소년들의 ‘분리’보다는 ‘통합’적 교육과정이 중심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한국인들의 다문화감수성 및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반 (선주민) 한국 청소년들도 인터뷰하였다.

실행 경로로써 작동하였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시혜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적 사회현상이 한국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역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함으로써 전국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한국 내에서의 실존 자체가 다양하며, 그 내부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연동되며,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가족제도 및 교육제도의 현실과 아직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¹⁵⁾의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 대상을 나라별, 이주 유형별로 선별하였으나, 조작된 설문조사 없이 ‘면 대 면’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객관화,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학교와 마을(지역사회)을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고, 그림을 통한 자기표현을 매개로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면담 대상자(구술자)들의 내면 심리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객관화, 일반화로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 구체성을 포착해낸 셈이다.

15) 한국사회의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은 1987년 제7공화국 헌법의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근거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출발했다. 이후 국가청소년정책의 흐름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1993년부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역량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런 정책변화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로 통합된 결과에 기인한다. 즉,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가 포괄하는 ‘가족 정책’의 하위로 취급되었다. 이는 여전히 청소년을 성인이 아닌 대상, 또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 혹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미성숙한 대상 등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정책대상으로만 접근할 뿐, 청소년이라는 생애의 어떤 시기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성격에 대한 고려가 희박하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12월 청소년담당부서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서 평생교육정책관실로 이관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와 복지의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교육적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윤혁,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분석 및 정책사업 정·비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5. 재인용)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로 분류되는 사람은 외국인주민(행정자치부), 체류외국인(법무부), 다문화학생(교육부), 다문화가족(여성가족부) 등 부처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된다.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즉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뿐 아니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¹⁶⁾ 이처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범주로 분류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주민의 자녀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범주는 이러한 법 조항을 넘어선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아동·청소년의 범주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해 놓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2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문화청소년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에서 비준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의하여 정의 경계가 확장된다. 즉 기존의 법이 근간으로 하는 합법 조건을 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포함한다.

이혜숙¹⁷⁾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등 다양하게 호명되는 다문화청소년을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자녀로 교육부는 국제

16)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이혜숙,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방안, 서울연구원, 2016

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로, 그리고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분류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¹⁸⁾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호명의 범주는 이들이 국적을 취득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연령과 실제 거주 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다문화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계를 나이와 거주라는 조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으로 한국사회로 들어온 다양한 이주민을 ‘지역 거주’라는 조건으로 범주화하여 외국인주민, 이주 주민, 이주민으로 호명하는 흐름과도 맞닿는다. 즉 이들은 국가 경계를 넘는 이주를 거치며 한국사회의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세계를 영위하는 사람, 주민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문화청소년은 곧 그러한 배경을 갖는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주민권의 관점에서 다문화 범주를 재정립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자신이 자리한 현장에 속하고 참여하는 권리, 시민으로서 자신의 생활세계를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권리와 의무를 함축한다. 즉 다문화 범주를 주민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다문화 개념은 시민-이주민, 시민-청소년 관점으로 재정의하게 된다. 즉 새로운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바로 시민-다문화청소년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시민-청소년 관점은 청소년이 청소년기 동안에도 시민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점을 주목한다. 더 큰 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청소년 스스로 알고 수용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한다(김윤나, 2012: 4). 시민-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은 시민됨과 시민으로서의 역설적 지위와 성인 혹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지위가 중첩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중적 지위 속에서 삶의 공간과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조정해 가는 존재라는 점을 주목한다(김윤나, 2012: 5). 바로 시민-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은 현재 삶의 자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리와 양상에 관심을 갖고 원리와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통찰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해석한다. 그리하여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사회와 노동시장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할을 갖추며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한다(이광호, 2010: 164). 시민-청소년의 삶은 자율과 책임을 겸비한 존재,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 숙의하고 실천하는 깨어 있는 존재로서 나아가도록 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한국사회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18)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주민자녀의 경우 외국인부모의 미성년자녀(부모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한국인 부모의 미성년자녀(부모 중 한쪽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 부모의 자녀(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교육부에서 국제결혼가정은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국적을 가지는 경우이며 두 명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는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2.24. 제정)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제9조)을 다문화학생으로 정의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거나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제18조)으로 정의한다(이혜숙, 2016: 8-9).

민주적 원리와 제도가 작동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거나 혹은 살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부모 혹은 결혼이민자 부모를 둔 13세~18세 연령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19)

2. 다문화 이민사회로의 본격 진입과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 관점

186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도 한인의 해외 이주가 이루어져 오던 한국사회가 오히려 해외로부터의 이주를 받아들이며 다인종, 다문화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간과 과정은 매우 특이하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세계적 사건이 일어났다. 1970년대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개혁 개방의 물결이 일었다. 1976년에는 중국에서 모택동이 사망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동독과 서독이 통일 독일을 이루었다. 냉전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 개혁과 개방 물결 속에 새로운 사회체제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가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1990년 9월 한국 정부는 소련과, 이년 후인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수교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와 동남아 국가와도 국교를 맺었다. 북방외교로 일컫는 일련의 외교정책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새롭게 열린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 사람들이 한국사회로 밀려들어왔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이민사회로 이동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인구집단 가운데 한 인구집단인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한국사회로 들어왔다.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로 한국사회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연수 장소를 이탈하여 소위 '불법이주노동자'의 삶으로 들어섰다.

1990년대 초기부터 소련이나 동유럽권에 거주하던 북한주민도 한국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994년부터 자연재해가 수년에 걸쳐 이어지며 북한사회가 극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북한주민의 국경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고질적인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조·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

19)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별도로 규정하여 대상화하기보다 한국의 보편적인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아동을 12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 '청소년 기본법'을 고려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북한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지칭하였으나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북한이주민의 성격이 변화해 왔음을 전제하고, 현재는 북한출생 청소년의 입국 수가 많지 않고, 탈북주민으로 중국 등지에서 생활하며 태어난 제3국 자녀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현재 북한이주배경 청소년은 북한출생 청소년, 부모가 북한주민으로 중국 등 제3국과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북한이주배경 청소년은 북한주민 부모를 둔 청소년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주민이 한국사회로까지 이동하였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한 또 다른 인구집단은 결혼이민자 여성이다.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동포이주민 여성이 한국사회로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에 사는 부모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그리고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을 위해 한국사회로 들어왔다. 정부도 1995년부터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이주는 구소련과 동남아국가 여성으로 확대되었다(조희원, 2010: 264).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다양한 국가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가정으로 유입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 혹은 결혼을 매개로 외국 국적의 이주민이 한국사회로 들어온 배경에는 당시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 출산력의 저하와 비혼 인구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해체 등 많은 사회 문제에 따른 시급한 인력 충원 문제가 있다. 외국 국적 이주민의 유입을 통하여 한국사회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하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며 사회제도와 가치 측면에서 아직까지 근대사회의 내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유입은 사실상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의 근간 영역과 상대적으로 분리된 노동 영역에 거주하는 반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가족의 영역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가정 유입은 한국사회의 일반 영역과 전면적이며 총체적으로 연결되며 심원한 문제의 원천이 되었다.

이주민의 유입이 도구적 차원의 필요 충족을 넘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이민을 통하여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민의 방식으로 이주민을 대상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 즉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한국사회로 받아들이는 목적은 한국사회 중심적 필요, 노동력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주민수급문제는 노동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인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주권을 보장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력의 착취, 인권 침해, 생존의 위험, 인간다운 삶의 해체 등의 문제는 절박했지만, 한국사회의 노동인력정책 대상으로 관리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은 비참하였다.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생활이 적응과 통합의 문제로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계기는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의 가족 영역으로 들어와 생활 관행과 상식, 그리고 이러한 생활문화를 생성한 가치와 인식에서 한국 가족의 생활세계와 만났다. 생활세계에서 결혼이민자의 삶이 부딪치는 적응과 통합의 문제는 급속히 사회 문제화 하였다. 언어와 생활습속, 가치와 인식이 전혀 다른 두 행위 주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문화 절벽으로 대면하며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사람 간의 갈등과 충돌로 악화되었다.²⁰⁾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는 이주민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3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²¹⁾

그러나 지난 십여 년 동안 제1차 및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외국인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함께 포괄하여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사실상 결혼이민자 중심의 특화되고 시혜적인 지원정책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편향적 시혜적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주민 이미지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낙후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고착하면서 오히려 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회인식을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주민 범주의 축소와 변형으로 결혼이민자에 관한 과도한 집중과 특혜의 이면에 놓여 있던 외국인 근로자, 특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은 이주민이 법의 보호망 밖에서 적절한 보호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체류 신분을 잃으면서까지 한국사회에 남아서 노동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처벌과 단속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면서도 교묘히 이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심지어 수많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던 결혼이민자 가정 영역에서도 이들 가정 안에서 자행되는 권위주의적 억압과 차별, 갈등과 가정 해체 문제는 주류 기관과 시설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쏟아지는 정책과 예산은 사실상 한국사회가 설정한 가치와 정책 범위 안에 있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주민정책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가 외국인 문제를 대통령 지시 과제로 본격화한 이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이주자를 통합하는 다문화정책 개발과 입안을 활발히 진행한 시점

20)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가족 영역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에 의한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인식이 부재한 채 외면당해 온 문제 층위가 쌓여 있는 매우 특수하고 복잡한 영역이다. 가족의 영역 안에는 권위적이며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 그리고 민주적이며 근대적인 가치와 제도가 부정합을 이룬 채 실체로 살아 있다. 정치 세력은 권력의 이해나 필요에 따라 지양되어야 할 문제를 부조리하게 악용하기도 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서 고질화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면모가 바로 가족 영역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

2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 라는 비전에서 정책 목표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로 정하였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정책 목표로 1)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5)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으로 정하였다.

으로 거슬러 올라갈 볼 필요가 있다(오경석, 2007: 32-33). 오경석은 다문화정책의 기초인 다문화주의를 “상이한 국적, 체류 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으로 보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와 지지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의 특수한 삶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비국적자 및 체류 자격 미비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 시민권을 탈민족국가적인 방식으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보았다(오경석, 2007: 26).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가 모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주류사회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사실상 이주민의 사회적 존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주류사회의 문화적 원리와 의식세계를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임을 주목한다. 동화주의는 다문화주의가 출발하는 기본 전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주체 간에는 상호의존성에서 생성되는 상호 주체의 평등한 존중과 인정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정체를 승인하고, 타자의 존재를 주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로 이해한다(조영달, 2015: 9). 그리고 이주민이 고유한 문화적 경계를 갖는 집단 구성원으로 고유하고 특수한 민족 정체성을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삶의 방식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의 시대에 요구되는 보다 고차적인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나아가 다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민은 자기 정체성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며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인권, 종교적 다원성, 성평등, 준법,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퇴치, 국가 간 분쟁 방지, 대량살상무기 감축, 인도주의적 도움,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Hans Schattle, 2015: 48).

2005년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치로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부상할 때, 한국사회가 추구하고자 한 사회적 이상은 바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십 년을 바라보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실현했다고 자부하는 제도의 민주화를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근원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성장 역사 속에서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다문화주의는 2008년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사실상 그 본질을 배제당한 채 동화주의를 강제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되었다. 관과 민간이 정책과 운동으로 상호 협력하며 결실을 만들어가던 다문화정책은 이상과 자발성에 기초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관료제도 속에서 종속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는 복지정책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이민사회 진입의 목전에 이르렀다. 또한, 다문화주의 철학과 정책 또한 매우 깊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

국의 주류사회가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논의하고 다문화사회로 향해 간 지난 십여 년 동안 이주민집단 또한 관 주도적이며 주류사회 중심적인 다문화 지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성과를 일구었다. 그리고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사회가 추구해 온 다문화 주체 없는 다문화주의, 다문화란 이름으로 강제해 온 새로운 얼굴의 동화주의를 비판하였다. 이주민 집단이 독자적인 인식과 힘을 지니고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형이 새로운 전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바로 주류사회와 이주민집단이 독립적이며 대등한 주체로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갈 시점, 상호문화적 관계맺음의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가 논의되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영토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간문화성 혹은 상호문화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문화 주체 간의 차이나 공통점을 주목하면서도 각 문화 경계가 서로 접촉하거나 겹치는 부분, 서로 간의 간섭과 방해가 일어나는 부분, 상호 의존과 침투 현상에 특별히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 상호문화성은 각 문화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받기 위해 전개하는 투쟁이나 사회의 법적인 원리와 규범, 이해관계, 분배를 둘러싼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현실, 그리고 세계체제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관계를 포괄한다(허영식, 2010: 35-36).

이러한 상호문화성을 한국사회에 접합함에 있어서 실험적이라는 것은 민주성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발전과정 상에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문화 주체가 자기 경계 안에 고립된 채 배타적이며 평행적인 공존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성에 기초한 겹침을 주목하며 소통과 번역, 상호 이해와 통합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화 코드를 공공의 영역에서 환영하고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동의 영역에서 상호문화성을 추구하는 개별 주체 사이에 독립적이며 평등한 존재성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개인 주체는 발전과정 상에 있는 과도적 존재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호문화성은 시민으로서의 개인, 권력의 주체이며 포기할 수 없는 자율성의 원천인 개인으로서의 시민, 민주적 시민 개념과 만난다.

설동훈·이병하(2013)는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시민통합 모델을 탐색하였다. 시민통합 모델은 주류사회와 이주민 모두 서로 간에 새로운 상호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주류사회는 이주민을 차별과 배제로부터 보호하고 취업과 고용을 안정화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주민 개인은 주류사회의 언어, 역사 및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등, 법치 등 주류사회의 형성과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내면화할 책임이 있다(설동훈·이병하, 2013: 212-213).

위의 모델을 한국사회에 적용해보고자 할 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는 한국사회가 아직 시민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사회 전체에 안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시민사회로 발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회로 사회제도의 생성과 운영에 관련된 전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권위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권위주의적 사고와 제도는 여전히 강고히 존재하며 동화주의적 공동체주의와 애국주의와 결합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이민사회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각 개인은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에 '깨어 있는' 행위 주체로서 현 사회의 제반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깨어 있는' 시민으로, 민주공화국의 공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 문해력'²²⁾을 갖춘, '깨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요청된다. 다문화 이민사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과업이 무엇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할 영역이 청소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1993년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1항).²³⁾ 또한,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항)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이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 또한 2015년 1월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

22) 심정보(2017)에 의하면,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은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성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적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자선과 자원봉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한다. 청소년들에게 시민을 위한 지식은 물론이고 기법을 통해 공적 생활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국가적으로 스스로 효능적으로 살도록 민주주의 제도, 이슈, 문제, 실천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개념, 절차적 기술, 행위를 통한 학습, 정치적 참여 등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를 통해 공적 생활을 하는 데 효과적인 정치적 소양으로서 관용, 공정성, 진리 존중, 이유 있는 논변, 차이 존중 등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심정보, 2017: 95; 2014: 115).

23) 청소년 기본법은 이러한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2조 2항에 장기적,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진 방향으로 청소년의 참여 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을 명시하였다.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장비 및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청소년이 발달과업의 성취와 함께 궁극적으로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주체로 성장하는데 갖추어야 할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민주시민 생활양식을 지향한다. 세계화 시대의 시민은 자유·대화·공동체 지향의 세 가지 차원에서 관용, 공정, 시민적 용기,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비판 능력, 참여, 책임감, 관점 취득, 연대, 충성 등의 가치 덕목이 요구된다. (허영식, 2016: 4).

한편, 세계시민 개념은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 속에서 국민국가 간 대립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세계적 차원의 전쟁과 파괴가 자행되어 온 역사 속에서 저항적으로 출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옥스팜(Oxfam)에 의하면, 세계시민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부조리에 참지 않고 지역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참여하고 세상을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Schattle Hans, 2015: 50).²⁴⁾

캐나다 매니토바 주 교육부는 이러한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다음 열 가지를 제시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선택, 결정, 말에 맞게 행동한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만큼 중요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는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남을 돕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지만, 지적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이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²⁵⁾

민주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성숙시켜 가는 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영역을 통해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바로 전지구

24) A global citizen is someone who is aware of and understands the wider world - and their place in it. They take an active role in their community, and work with others to make our planet more equal, fair and sustainable. For Oxfam, global citizenship is all about encouraging young people to develop the knowledge, skills and values they need to engage with the world. And it's about the belief that we can all make a difference (<http://www.oxfam.org.uk/education/who-we-are/what-is-global-citizenship>).

25) http://www.edu.gov.mb.ca/k12/cur/socstud/foundation_gr9/blms/9-2-4d.pdf; Schattle Hans, 2015: 52.

적으로 연결된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나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를 탐색하는 ‘인간적인 각성’ 과 이 삶의 자리가 어떻게 출현하고 작동하는가를 탐색하는 ‘정치적 각성’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²⁶⁾ 이런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존재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존재성은 제국주의 지배와 분단, 전쟁과 냉전, 권위주의 통치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 한국사회가 어떻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와 불평등이 생성되었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민주시민 생활양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구체적인 자기 삶의 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통한 자기 존재성에 관한 이해와 받아들임,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 자기 존재성을 구축해 온 삶의 조건과 힘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정치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청소년이 이러한 인문적, 정치적 문해력²⁷⁾을 두루 갖추게 될 때 이들은 소박하고 평범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도 현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통찰할 힘을 갖추게 된다. 작고 평범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도 이들은 날카롭고 예리하며 진취적인 변화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스스로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 일반 청소년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와 지구촌사회가 장차 다문화 이민사회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스스로 탐색하고 구현해 갈 것이다.

26) 인간적 각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인문적 역량 개념이 있다. A. Sen(1992, 1999)에 의하면, 인문적 역량 개념은 가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존재의 가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성찰하여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나 자유를 말한다. M. Nussbaum(2000)은 인문적 역량(human capabilities)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력 있게 참석하며 신중하게 예측하고 도덕적인 통찰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은 점진적으로 함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통합, 감각, 상상력, 사유, 정서적 통합, 실천적 이성, 연대,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문적 역량은 바로 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생성하고 활동할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생활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문해력’을 기를 때, 개인은 ‘각성된 통합적 주체’로서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27)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이란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성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적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자선과 자원봉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한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시민_되기를 위한 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 공적 생활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국가적으로 스스로 효능적으로 살도록 민주주의 제도, 이슈, 문제, 실천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개념, 절차적 기술, 행위를 통한 학습, 정치적 참여 등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를 통해 공적 생활을 하는데 효과적인 정치적 소양으로서 관용, 공정성, 진리 존중, 이유 있는 논변, 차이 존중 등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성보, 2017)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세계적 동향

가. 다문화 정책의 세계적 동향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17년)에 따르면,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이민자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2010년 10월 메르켈 독일총리가 로이터 통신에서 발언한 “다문화주의 실패선언” 이후 2011년 2월 EU 안보회의 등에서 캐머런 영국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체류국의 언어,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민자가 창의적인 사회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며, 각국은 이민정책을 활용한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 보고서 2011’을 보면 미국 500대 기업 중 40.8%인 204개는 이민자가 창업을 했고,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특허등록 상위 10개 대학의 1,466개 특허 중 76%는 이민자가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각국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정책 등 이민정책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국민, 국경, 언어, 민족 등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였다면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게 되었고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제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세계 도처로부터 국경과 인종과 언어를 넘어 이주하는 노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문화적 단일성과 통일성을 해체하고, 급격히 다문화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선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온 경제적 번영과 발전의 논리는 새로운 노동인구의 수요를 급증시켰고, 개인주의적 삶을 향유하려는 사회 구성원 대중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길을 택했다. 그리하여 피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²⁸⁾ 하지만 각국의 다문화 역사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도 나라별로 다르다.

28) 박충구, 독일 다문화사회 이행과정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2009

나. 다문화주의 정책유형별 구분 및 주요 해외 사례

다문화정책의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 정책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차별 배제 정책(일본, 독일, 한국 등)으로 이주자를 경제적 가치 이외에는 인정 하지 않으며, 문화적 단일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며 도입한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와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사회일원으로 인정하는 동화주의(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를 들 수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1960년대까지 표방해온 용광로(melting pot)모형과 프랑스가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수용할 경우, 공화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공화주의 모형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동등한 공존과 참여가 강조되며 소수자들의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을 설정하는 다문화주의(캐나다, 호주, 미국 등)를 들 수 있다.

벤틱과 킴리카(Banting & Kymlicka, 2003)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동화주의에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입한 다문화정책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²⁹⁾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강한 다문화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는 ‘약한 다문화주의 국가’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보통 수준의 다문화주의 국가’로 규정된다.

〈표 II-1〉 다문화정책의 실시 수준에 따른 다문화주의 국가 분류

약한 다문화주의 국가	보통 수준의 다문화주의 국가	강한 다문화주의 국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미국,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9) 아홉 가지 분류는 1. 다문화주의를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헌법이나 의회법으로 확인하는 것, 2. 소수민족을 지원하는 정부조직이나 위원회의 존재여부, 3.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주의 도입여부, 4. 공공문화 매체에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과 감수성 발휘를 명시화하고 일반 문화매체의 설립조건에 소수민족 대표자의 포함여부 확인, 5. 복장규정, 일요일 강제휴무 조항 등의 면제, 6. 이중국적의 허용, 7. 소수민족협회와 활동을 지원, 8. 이중언어 교육과 모국어교육 지원, 9. 소외받는 소수민족을 위한 우대정책이다. 이는 국적을 가진 소수자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경 안에 머물며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 국가는 형성배경³⁰⁾에 따라 각기 다문화 사회로의 다른 양상의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드(Wood, 2009)에 의한 이민자정책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정책, 차별배제 정책 혹은 손님노동자정책(guest worker policy), 동화주의 정책, 다문화정책을 거쳐 등장한,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성숙한 정책으로 상호문화정책을 들 수 있다.

〈표 II-2〉 이민자정책 유형비교³¹⁾

	무정책	손님노동자정책	동화주의정책	다문화정책	상호문화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이주민 무시	제한된 이슈 비공식적 협력	이주민 불안정	역량강화 주체로 지원	통합주체로 지원
교육정책	이주민 자녀의 한시적 인정	이주민 자녀 학교 등록	국가 언어 역사 문화 강조, 보충수업 무시	다원적 학교지원, 모계지원, 종교, 문화교육	국어 모계언어·문화교육·상호문화함양, 탈분화
시민권과 거버넌스	권리·인정 없음	권리·인정 없음	자연적동화 추진 자문구조 없음	지역사회 리더십, 인종 기반 자문과 지원	문화 간 리더십, 협력, 자문장려, 혼종성 함양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역사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과 단일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로서의 분단을 경험한 우리와 유사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독일의 다문화사회 이행 과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상적인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는 아일랜드 및 캐나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0) 최성환(2008)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형성배경으로 1) 국가의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캐나다, 미국 등)가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2) 유럽국가들처럼 비교적 동질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경영과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를 겪고, 그 결과 이주 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들이 있다.

31) 출처: Wood, 2009. 23-24. 최병두(2014)의 표를 재구성함

1) 미국 사례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흔히들 미국을 떠올린다.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 우기도 하는데, 미국은 건국초기 강조된 백인(앵글로 색슨) 청교도주의로의 통합을 강조한 동화주의가 지배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동양계와 남미계 이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앵글로색슨 문화로 통합하려는 동화주의 이념은 위기에 봉착했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인종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도 변화하게 되어,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하나의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새로운 동질문화를 형성하려는 용광로(Melting pot, 1965)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백인위주의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주변 소수문화가 녹아서 흡수되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용광로 이론은 한계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샐러드볼(salad bowl), 즉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샐러드 볼이란, 맛과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이 한 그릇에 섞여 서로 맛을 돋워 하나의 요리가 되는 것처럼, 미국 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여 소수민족 문화가 각기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려, 화합된 미국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사회통합의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이다.(하윤수, 2009)

미국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 초반에는 예비교사들도 다문화교육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유치원 및 대학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히스패닉·아시아의 모국어(스페인어 등) 사용 교사 채용 요구가 높아져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교사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생활상담지도교사와 ESL³²⁾ 교사를 배치하여 그들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특별교육과정과 각종 기념일을 통해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학(communitary colleges)에서 미국시민 소양교육과 영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공교육 과정에 반인종차별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복지 프로그램 수혜는 제한했지만 자녀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라는 조기 유아교육을 제공했다(김미나, 2009). 이를 통해 소수민족의 교육기회 평등에서 교육과정 및 조건상 평등으로, 그리고 결과의 평등에의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인종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중심으로, 소수

32)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약어로, 제2 언어로서의 영어를 말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특히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 또는 이민해 온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를 뜻한다.

민족 학생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베넷(Bennett, 2007)은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문화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화다원주의의 가치를 주장하는 미국 공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학생의 지적·개인적·사회적 발달의 가능성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것이다.³³⁾

한편,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체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다문화정책 관련 방향성 설정을 통한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지방정부인 주정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법령으로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지방정부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주민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교육 체계와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장인실, 2006)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전반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자유주의 정책으로 정체성교육은 인정되었으나,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한 교육지원은 별도로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었다.³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에 있어서 평등과 공동체주의를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국내 교육격차 해소와 소수자지원 다문화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위축되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을 시작하는 해외 기업가들의 비자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는 ‘국제 기업가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연장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또한, 이민자 입국 제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법정 다툼 끝에 연방대법원에서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란·리비아·시리아·예멘·소말리아·차드 등 이슬람 6개국과 북한·베네수엘라 국적자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반이민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라 다문화교육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출신들은 미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이다. 미국 기업가정신연구소(CAE)가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2017년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43%가 이민자 1세 또는 2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33) 임선일 외, 상호문화주의를 토대로 하는 ‘위탁형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015-02

34) 최충욱,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8

2) 독일 사례

두 번째로, 독일의 다문화사회 이행과정과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도 나치 정권이 존재했던 다양한 문화적 주체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시행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한 산업화,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수용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1998년 이민국을 신설하고 1999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전의 국적법은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은 외국인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독일 혈통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1999년 국적법 개정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가정 출생자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숙주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 하였다. 단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했을 경우에 한해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외국인들은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할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이민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민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독일 스스로 이민 국가이자 다문화 국가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정한 이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는 것에 있다. 2007년 독일 하원은 EU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이민법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수정 이민법에 따르면 향후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독일의 삶의 방식이나 시스템,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동화주의적인 목표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터키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독일에서의 국제결혼이 5분의 1이고, 신생아 4명 중 적어도 1명이 독일로 이주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독일 GNP의 약 10%는 국제 이주민에 의해 창출되고 음식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의 일정 부분은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 기준 다문화 인구가 8.83%에 달했으며 국가 간 경제적 통합(EU)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독일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제공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왔다.³⁵⁾

단일민족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독일은 이렇듯 다문화 사회의 도래가 시대적 대세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오랫동안 단기 인력제도에

35) 금혜성, 임지혜,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2010

중점을 둔 억제적인 외국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른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유입사례는 한국의 사례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면에서 다른 면이 많지만, 독일은 단일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결과로서 분단 등으로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 다문화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사회도 2020년에는 254만 명의 체류 외국인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5%를 넘어설 전망이다. 독일이 외국인 비율이 3~5% 정도 받아들인 때는 1960년 중후반대 가량이라고 볼 때, 독일 사회는 우리 사회에 비하여 40년 남짓 앞서 다문화적인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정책 연구 및 적용을 하면 유용하다고 하겠다.

독일이 무정책 시대를 지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방어적 정책을 거쳐, 동화 내지는 통합정책을 사용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민학생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및 유아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교육과 아울러 이주민의 동화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가정자녀가 독일어의 성공적 습득을 위해서는 모국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와 어머니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통독이후에는 동독에서 온 이주자의 동화교육 실시와 이주청소년과 공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한 이주민 집단을 활용하여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연수프로그램에도 다문화능력 자격코스를 개설하여 교수법 및 현장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통합과정 정치교육 지침³⁶⁾을 살펴보면, 11가지 정치교육이 주요 논제를 담고 있다. 1)민족주의 2)규칙과 법 3)아동의 권리: 인권 4)생산과 노동 5) 이해갈등: 새로운 일자리 6)다원성 7)정의와 타자에 관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철학 8)전쟁과 평화 9)공통적 합의와 변혁 10)미디어와 정치 11)디지털 영화 제작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소양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능력은 곧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정비례한다고 볼 때 독일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되는 시민교육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36) 독일의 공교육에서의 정치교육은 1970년대 후반 보이텔스바흐에서의 사회적 합의 기반 민주시민교육이며, 이는 아동 청소년의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 생활 세계와 수업 실천에서 문제 중심의 소통 및 토론을 통한 정치 시민교육이다. 이러한 정치시민교육에는 1)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2) 사회적 논쟁 상황을 그대로 교실에서 재현하며, 3)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독일의 이러한 정치시민교육은 영국과 미국 등의 시민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그 밖의 나라들 - 아일랜드 및 캐나다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평화대타협(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 이후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변화하였다. 다국적기업들과 외국인이민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인종차별이 적은 아일랜드로 몰려갔고, 그 결과 이민자들의 뒷받침으로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적극적인 다문화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2004년에는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이민자들이 경찰과 교사 등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시민권자도 세금을 내면 지방정치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지 7년 된 흑인 아프리카 이주민이 시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수도 더블린에는 학생의 50%가 외국인인 초등학교가 있고, 이주민 교사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⁷⁾

한편,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조례(Multiculturalism Act)’를 국시로 선언하고 다문화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고 1991년 ‘다문화주의와 시민국(Department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을 설립하고, 이후 1993년 ‘캐나다 문화유산국(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으로 전환하여 반인종차별주의 정책, 다문화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관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캐나다의 교육정책에서 핵심가치로 간주되는 덕목은 인권존중, 배려, 공존, 정직과 봉사활동 등이며 사회과 과목에는 다문화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 정규 수업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배우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타문화를 경험한다. 예비교사들은 다문화주의 관련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배상식&장흔성, 2014; 이근호, 2006). 또한 캐나다에는 이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Heritage Language Program, HIP)라고 불리는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문화를 보전하고, 가족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며, 어린이의 언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박정은, 2009).

특히, 캐나다에서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온타리오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는 2009년부터 주 정부 차원의 평등과 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에서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 주간 운영 등 다양한 학교 안팎의 행사를 실시한다.
- 3)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이해 부족과 상호 이질감 증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다문화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의 전통 무용에 대해 조사하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화를 탐구하기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37) 최충욱,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9

다. 시사점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 감에 따라 지금부터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며,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기약해 나갈 장기적인 로드맵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한 실천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혼란을 거듭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범 사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며, 미국과 독일,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사례 가운데 한국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선, 인종 분리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중심으로, 소수민족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소수 다문화가족 또는 소수의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 사실상 분리 복지 정책에서 모든 한국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 매우 절실하다. 즉, 문화다원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며, 모든 학생의 지적·개인적·사회적 발달의 가능성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미국 공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에서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회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공교육에서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실시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능력 자격코스를 개설하여 교수법 및 현장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등 다른 다문화국가들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로써,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의 최우선 요건으로 다문화청소년 관련 교수진(교사, 강사 등)의 전문성 함양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교수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교사들의 직무연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교원관리 정책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사범대학교와 교육대학교의 교원양성과정에서 미리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교수역량 강화를 폭 넓게 학습할 것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통합과정 11가지 정치교육 주요 논제는 1)민족주의 2)규칙과 법 3)아동의 권리: 인권 4)생산과 노동 5) 이해갈등: 새로운 일자리 6)다원성 7)정의와 타자에 관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철학 8)전쟁과 평화 9)공통적 합의와 변혁 10)미디어와 정치 11)디지털 영화 제작 등인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독일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교육과정 전반을 재검토하며, 초중등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적극적인 다문화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진화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2004년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경찰과 교사 등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인권 정책의 혁신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학교의 정규 수업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배우기도 하며, 지역사회(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타문화를 경험한다. 아울러, 이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Heritage Language Program(HIP)'에 대해서는 수범 모델사례로 별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문화를 보전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며, 어린이의 언어능력을 발전(박정은, 2009)시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지금,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다문화학생들의 수는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민주) (세계) 시민교육을 주목하고 있다.³⁸⁾ 즉, (민주) (세계) 시민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패쇄적 애국심교육이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한 '부드러운/순화된 애국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 개별 국가 내에서 채택된 결정이 그들의 경계 밖에 위치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통신의 발달이 더욱 쉽게 그들의 경계를 넘어 심의를 만들어 내면서 시민권/시민성³⁹⁾을 위한 새로운 틀과 그 수행이 존재한다. 민주적 시민권이 일반적으로 독립된 영토를 가진 국가의 경계 내에서 지켜질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세계화 조건에서의 지구적 시민권은 오래된 경계/울타리를 없애고 있다. 세계시민권이 현실화되려면 근대 시민권의 존립 근거였던 국민/민족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지구적 시민의 정체성을 상정해야 한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간의 지위, 역할, 권력과 주체 문제를 주로 다룬다. 세계시민은 더 넓은 세계를 알고 있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으며,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며, 사회정의에 의해 분노할 줄 알고, 지역적인 수준

38) 심정보,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다문화교육 정책, 2014

39) 시민성(citizenship)이 복잡한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 노력 그리고 제도적 실천이라면, 이 때 개인은 분명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로 기능하기 위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40) Soutphommasane, T. 다문화 사회에서의 유덕한 시민 애국주의, 캠브리지 온라인 북: <http://ebook.cambridge.org>; <http://dx.doi.org/10.1017/CBO9781139177740.004>

에서 글로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세상을 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장소로 만들려고 행동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Oxfam, 2006).

옥스팜(Oxfam)은 세계시민성으로 사회정의와 공평, 다양성, 세계화와 상호의존,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갈등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시민적 역량’으로 첫째, 시민사회의 참여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강화되는지 그리고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둘째 경제와 사회의 번영에 필요한 지식과 전통의 다양한 문화적 형태의 상호연결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 셋째 상호주관적 인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역량, 넷째 가족과 생산물과 지역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력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Lingard, Nixon & Ranson, 2011: 22).

가치, 신념,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⁴¹⁾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한국의 청소년들도 세계시민적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적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각국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넓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세계시민성과 세계지도력, 세계노동력으로 요약되며, 글로벌 마인드나 글로벌 에티켓 함양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한상철, 2009) 이러한 세계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과 수용성을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으로 자연스럽게 녹여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경험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며, 세계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질’적인 척도로써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시대 청소년 모두의 시민_되기 위한 정치적 문해력을 길러 나가는 청소년 시민교육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41) 글로벌 교육의 주요 교육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담론은 공론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고, 그런 이유로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언표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담론과 합의 고찰’(김진희 외, 한국교육. 제40권, 151-181, 2013)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와 민족국가,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동향과 전망’(심성보, 민주피아 특강,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017)은 다양한 국가들의 세계시민교육 실태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을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Peterson & Warwick, 2015; Kisby, 2014: 12)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에 두고, 일국적 차원의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차원의 세계시민주의를 통합하여 논의하였음을 밝혀 둔다.

Ⅲ.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및 지원정책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청소년·학생⁴²⁾ 현황

가.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가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총합계는 총 인구의 3.4%인 1,764,664명이며, 이는 2015년도 1,711,013명에서 53,651명(3.1%)이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도 4.5%, 충남 4.5%, 서울 4.1%로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인구의 5% 이상의 외국인주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시도별 외국인주민 총괄 현황⁴³⁾

(단위 : 명, %)

시도	총인구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269,554	1,764,664	3.4	100
서울특별시	9,805,506	404,037	4.1	22.9
부산광역시	3,440,484	59,872	1.7	3.4
대구광역시	2,461,002	40,251	1.6	2.3
인천광역시	2,913,024	94,670	3.2	5.4
광주광역시	1,501,557	31,162	2.1	1.8
대전광역시	1,535,445	26,656	1.7	1.5
울산광역시	1,166,033	35,929	3.1	2.0
세종특별자치시	242,507	6,084	2.5	0.3
경기도	12,671,956	571,384	4.5	32.4
강원도	1,521,751	28,469	1.9	1.6
충청북도	1,603,404	56,660	3.5	3.2
충청남도	2,132,566	95,553	4.5	5.4
전라북도	1,833,168	45,836	2.5	2.6
전라남도	1,796,017	53,066	3.0	3.0
경상북도	2,682,169	78,339	2.9	4.4
경상남도	3,339,633	114,594	3.4	6.5
제주특별자치도	623,332	22,102	3.5	1.3

42) 동일한 대상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부처 및 일반자치행정기관, 교육자치기관 등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고 있는 상황과 다문화청소년의 존재 유형이 반드시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어서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까지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6년 11월 01일 기준, 행정안전부, 2017년 11월 발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 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충남, 서울시의 경우 이른바 '다문화도시'로 본격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기 571,384명(32.4%), 서울 404,037명(22.9%), 인천 94,670명(5.4%) 등 외국인주민의 60.6%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대도시 인구 편중의 문제가 다문화 시대에 진입하면서도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될 우려를 전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 있는 전국적 성장의 정책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국적 미취득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의 유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증가는 조사 대상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통계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를 기준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집계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하였고, 외국인 주민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18세 이하)만 집계하며,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다문화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해야 한다.

〈표 Ⅲ-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⁴⁴⁾

(단위: 명)

구분	외국인 주민 합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주민 자녀 (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16	1,764,664	946,561 (53.6%)	818,103 (46.4%)	1,413,758 (80.1%)	541,673 (30.7%)	159,501 (9.0%)	95,963 (5.4%)	235,926 (13.4%)	380,695 (21.6%)	159,447 (9.0%)	191,459 (10.8%)
2015	1,711,013	921,006 (53.8%)	790,007 (46.2%)	1,363,712 (79.7%)	573,378 (33.5%)	144,912 (8.5%)	82,181 (4.8%)	216,213 (12.6%)	347,028 (20.3%)	149,751 (8.8%)	197,550 (11.5%)
증감	53,651 (3.1%)	25,555 (2.8%)	28,096 (3.6%)	50,046 (3.7%)	△31,705 (△5.5%)	14,589 (10.1%)	13,782 (16.8%)	19,713 (9.1%)	33,667 (9.7%)	9,696 (6.5%)	△6,091 (△3.1%)

그러므로 위 통계자료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였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려우며,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이를 확정하거나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만, 각 유형별 누적현황과 증가속도(증감)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누

44)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재구성 인용.

적 외국인주민 인구수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의 외국인주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은 54만 여명의 외국인노동자⁴⁵⁾(30.7%)와 24만 명가량의 외국국적동포(13.4), 16만 명가량의 결혼이민자(9%) 및 국적취득자(9%),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외국인다문화 정책기조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정책에 집중하며, 외국인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다양한 인권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Ⅲ-3〉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

(단위 : 명)

합계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963,174	298,858	158,620	151,002	199,161	155,533
구성비	31.0	16.5	15.7	20.7	16.1

다문화가구⁴⁶⁾ 가구원은 963,174명으로 한국인배우자 298,858명(31.0%), 결혼이민자 158,620명(16.5%), 귀화자 151,002명(15.7%), 그리고 이들의 자녀 199,161명(20.7%), 기타 동거인 155,533명(16.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비율 5% 이상인 지역은 전국 65개 시군구이고, 경기 20개, 서울 16개, 경남 6개 시군구 등이 그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수 3만 명 이상은 전국 7개 시군구인데, 안산 79,752명, 영등포 55,427명, 수원 54,284명, 화성 48,457명, 구로 48,279명, 시흥 45,668명, 부천 33,081명 순이다. 인구 대비 비율 10% 이상으로 분류해 보면, 전국 9개 시군구가 포함되는데, 영등포 13.9%, 음성 12.0%, 금천 12.0%, 영암 11.4%, 포천 11.2%, 진천 11.0%, 구로 10.9%, 안산 10.7%, 시흥 10.6% 등이다.

한국 사회를 아직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각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이미 다문화공동체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45)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고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제조업에 종사하며, 최근 농산어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6)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를 말하며,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Ⅲ-4〉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 : 외국인주민 수 기준 분류⁴⁷⁾

전 국(65)	3만명 이상(7), 2만명 이상(12), 1만명 이상(36), 1만명 미만(10)
서울(16)	영등포구 55,427(13.9%), 구로구 48,279(10.9%), 금천구 29,660(12.0%), 관악구 29,270(5.7%), 광진구 20,314(5.6%), 동대문구 18,512(5.1%), 동작구 18,033(4.5%), 용산구 17,080(7.6%), 성북구 14,247(3.2%), 서대문구 13,436(4.2%), 마포구 13,360(3.6%), 송파구 12,562(2.0%), 성동구 12,151(4.1%), 강서구 11,962(2.1%), 종로구 11,325(7.3%), 중구 11,312(8.8%)
부산 (1)	강서구 6,688(6.3%)
인천 (5)	부평구 19,187(3.5%), 서구 18,781(3.7%), 남동구 18,511(3.5%), 남구 12,310(3.0%), 연수구 11,121(3.4%)
대구 (1)	달서구 12,422(2.1%)
광주 (1)	광산구 16,421(3.9%)
울산 (1)	울주군 12,222(5.5%)
경기(20)	안산시 79,752(10.7%), 수원시 54,284(4.5%), 화성시 48,457(7.4%), 시흥시 45,668(10.6%), 부천시 33,081(3.9%), 성남시 29,199(3.1%), 평택시 28,999(6.1%), 용인시 26,317(2.7%), 김포시 25,133(6.9%), 고양시 21,340(2.1%), 포천시 18,271(11.2%), 광주시 17,626(5.5%), 파주시 16,478(3.9%), 안성시 14,602(7.4%), 오산시 13,274(6.2%), 안양시 12,568(2.2%), 양주시 11,550(5.6%), 남양주시 11,545(1.8%), 군포시 11,113(3.9%), 광명시 10,269(3.1%)
충북 (3)	청주시 19,111(2.3%), 음성군 12,594(12.0%), 진천군 8,134(11.0%)
충남 (3)	천안시 27,972(4.4%), 아산시 22,741(6.9%), 당진시 8,396(5.1%)
전북 (1)	전주시 10,179(1.5%)
전남 (2)	영암군 6,862(11.4%), 진도군 1,726(5.9%)
경북 (4)	경주시 13,941(5.3%), 경산시 10,918(3.9%), 고령군 2,526(7.6%) 성주군 2,328(5.6%)
경남 (6)	김해시 25,957(4.9%), 창원시 24,881(2.4%), 거제시 14,340(5.5%), 함안군 5,161(7.5%), 창녕군 3,325(5.4%), 고성군 2,701(5.1%),
제주 (1)	제주시 15,481(3.3%)

인구통계구조상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1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다문화지역공동체’임을 규정하고, 그에 걸 맞는 전략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다문화정책 및 그 수행체계

47)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인용.

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이미 와버린 다문화지역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혁신적인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민과 관,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의 새로운 사회공동체구성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다문화주의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동화주의로 흐르고 있는) 다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격 진입하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국가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그 비전에 입각하여, 관계 법령들을 재정비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각개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사업의 통일적인 수행 체제를 정립하며, 동시에 다문화복지정책의 단순 전달체계로서의 지방자치단체(다문화 수행체제)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 실정에 터한 능동적인 '다문화지역공동체' 정책을 적극 구안하여 실행,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중앙정부의 혁신적인 외국인·다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담길 것과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다문화복지의 단순전달체계로서가 아니라 다문화 지역공동체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 혁신을 포함하길 기대한다.

나.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총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⁴⁸⁾

(단위 : 명)

합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26.0%(52,446명), 서울 15.3%(30,761명), 인천 6.2%(12,440명) 등 수도권에 47.6%(95,647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만 보면, 수도권에 68.2%(6,736명)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표 Ⅲ-6〉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 현황⁴⁹⁾

(단위 : 명)

시도	합 계		귀화 및 외국인 자녀		국내출생 자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201,333		9,874		191,459	
서울	30,761	15.3	2,666	27.0	28,095	14.7
부산	8,852	4.4	329	3.3	8,523	4.5
대구	6,388	3.2	239	2.4	6,149	3.2
인천	12,440	6.2	758	7.7	11,682	6.1
광주	4,881	2.4	123	1.2	4,758	2.5
대전	4,594	2.3	163	1.7	4,431	2.3
울산	4,400	2.2	148	1.5	4,252	2.2
세종	829	0.4	35	0.4	794	0.4
경기	52,446	26.0	3,312	33.5	49,134	25.7
강원	6,046	3.0	162	1.6	5,884	3.1
충북	7,424	3.7	257	2.6	7,167	3.7
충남	11,574	5.7	397	4.0	11,177	5.8
전북	9,751	4.8	264	2.7	9,487	5.0
전남	11,590	5.8	258	2.6	11,332	5.9
경북	11,755	5.8	289	2.9	11,466	6.0
경남	14,388	7.1	354	3.6	14,034	7.3
제주	3,214	1.6	120	1.2	3,094	1.6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 현황을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표 Ⅲ-7〉과 같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에도 순증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인용.

〈표 Ⅲ-7〉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 현황 연도별 추이⁵⁰⁾

(단위 : 명)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세종	-	-	-	-	-	-	563	660	729	829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이를 다시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현황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전국 현황⁵¹⁾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전국	총계	201,333	9,874	191,459
	0-6	113,506	2,434	111,072
	7-12	56,768	3,993	52,775
	13-18	31,059	3,447	27,612

50)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인용.

51)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를 재구성하여 인용.

외국인주민 자녀를 연령대로 분류해 보면,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6세 이하)은 113,506명으로 56.4%에 해당하며, 초등학생(7~12세) 56,768명(28.2%), 중고생(13~18세) 31,059명(15.4%)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56.4%(113,506명)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소개한 다문화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향후 지속적으로 취학적령기 다문화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교육 과정에 진입하는 다문화학생의 대다수(95.1%, 191,459명)가 국내출생자녀라는 점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0~6세 미취학 아동이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의 56.4%에 해당된다는 점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중심의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의 연령대를 미취학 아동, 즉 다문화영유아기로 확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국가 책무성으로 시작하였던 누리과정 정책⁵²⁾ 중 다문화영유아 지원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공공 책무성에 입각하여 확대 지원하여, 다문화 영유아를 포함한 대한민국 아동들이 동일한 '교육복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부는 200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를 통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6년 99,186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10,201명(10.3%) 증가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82,733명, 중학교 15,945명, 고등학교 10,334명이 재학 중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1.9%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학교 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3.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1.2%로 0.2%p, 고등학교는 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전국 다문화학생 현황⁵³⁾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년	46,954	33,740	9,627	3,409
2013년	55,780	39,360	11,280	4,858
2014년	67,806	48,225	12,506	6,734
2015년	82,536	60,162	13,827	8,146
2016년	99,186	73,972	15,080	9,816
2017년	109,387	82,733	15,945	10,334

52) 누리과정은 2011년 만 3세~5세 대상으로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해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고 국가가 교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유아와 일반유아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53) 교육부(2017), 교육부,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자료 인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이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가정의 증가와 앞서 살펴본 듯이 이들 가정의 미취학 아동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중도입국 청소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Ⅲ-9> 전국 다문화학생 현황(전체, 99,186명)과 <표 Ⅲ-8>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 중 취학연령(7~18세) 아동(87,827명) 수를 비교해 보면, -11,359명의 편차가 있음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편차는 중앙부처 행정기관들 간의 통계기준(개념) 차이 및 기준 시점의 차이, 즉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매년 11월 01일,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는 4월 01일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는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차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그리고 법무부와 통계청 등은 다문화 관련한 각종 통계들을 통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것과 아울러 특별하게 (학교 밖)다문화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9,019명(26.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22,019명(22.2%), 필리핀 13,123명(12%), 중국(한국계) 12,367명(11.3%), 일본 11,502명(10.5%), 기타 19,038(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⁵⁴⁾

(단위: 명, %)

국가	다문화 학생 수	비율
계	109,387	100.0
베트남	29,019	26.5
중국	24,338	22.2
필리핀	13,123	12.0
중국(한국계)	12,367	11.3
일본	11,502	10.5
기타	19,038	17.5

54) 교육부,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자료 인용.

그리고 다문화학생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89,314명(8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12,281명(11.2%),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7,792명(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다문화학생 유형별 현황⁵⁵⁾

(단위: 명)

구분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2017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2,281	9,280	1,958	936	107
2016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2,634	9,425	1,981	1,152	76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8,176	6,006	1,384	735	51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4,706	3,417	804	422	63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32,823	9,162	3,793	36	4,922	3,006	1,143	565	208	5,044	3,531	975	500	38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29,282	8,194	2,536	28	4,288	2,669	985	547	87	2,626	1,789	448	326	63

- 주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 2)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
- 3) 국내출생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4)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 5) 외국인가정 청소년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55) 교육부,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자료 인용.

다.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한편,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년~’17년)에 따른 2017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주민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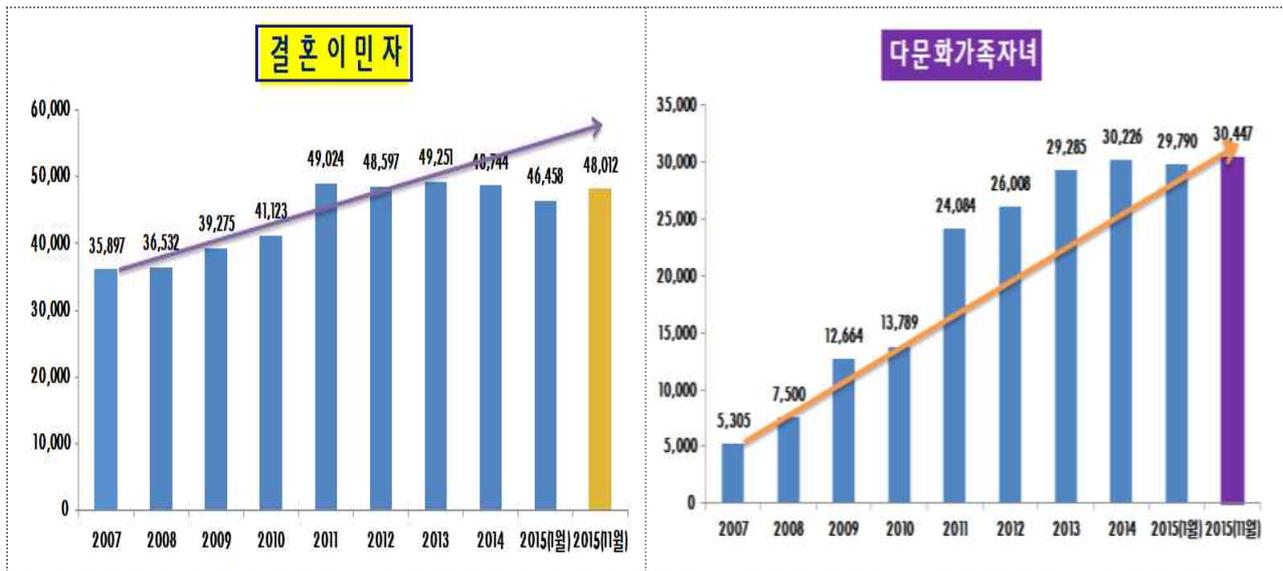
〈표 Ⅲ-12〉 서울시 인구 현황⁵⁶⁾

(단위: 명)

주민등록인구 (A)	소 계(B) (B=C+D)	비율(%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 취득한자(D)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9,904,312	68,093	0.68	27,573	20,439	20,081

그리고 정책수행여건 및 전망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증감 추이를 발표하였는데,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시행계획의 주된 대상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와 그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3〉 서울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증감 추이⁵⁷⁾



56)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p1. (2017.1) 여성가족부의 제2차「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년~’17년)에 따른 2017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을 말함. 2015년 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 (15. 11. 1. 기준으로 업데이트)

57)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p3. (2017.1). 재구성. 최근 10년간 결혼이민자 가구 및 다문화자녀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 결혼이민자 가구 : ’07년 35,897명 → ’15년(11월) 48,012명(34% ↑), 2) 다문화가족자녀 : ’07년 5,305명 → ’15년(11월) 30,447명(505% ↑)로 2016년도 결혼이민자 소폭증가(전년대비3.3% ↑), 다문화자녀(전년대비2.2% ↑)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수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55,427명(13.9%), 구로구 48,279명(10.9%), 금천구 29,660명(12.0%) 순으로 주로 서·남부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Ⅲ-14〉 전국 및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주민 현황⁵⁸⁾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A) ⁵⁹⁾	비율 B/A (%)	합계(B)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 녀(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269,554	3.4	1,764,664	1,413,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91,459
서울시	9,805,506	4.1	404,037	335,167	85,878	33,139	37,178	80,712	98,260	40,775	28,095
종로구	154,398	7.3	11,325	10,349	1,867	584	2,870	1,662	3,366	552	424
중구	128,160	8.8	11,312	10,200	2,215	612	1,650	2,155	3,568	612	500
용산구	224,993	7.6	17,080	15,283	2,386	1,229	908	2,518	8,242	773	1,024
성동구	294,744	4.1	12,151	10,009	2,218	1,034	1,952	2,065	2,740	1,148	994
광진구	363,979	5.6	20,314	17,503	4,481	1,364	3,358	4,041	4,259	1,728	1,083
동대문	359,935	5.1	18,512	16,191	2,106	1,235	6,452	2,163	4,235	1,331	990
중랑구	399,317	2.	8,081	5,770	1,116	1,219	392	1,127	1,916	1,147	1,164
성북구	451,800	3.2	14,247	12,177	1,098	1,135	5,223	1,247	3,474	934	1,136
강북구	316,212	2.0	6,197	4,295	779	947	352	950	1,267	948	954
도봉구	336,745	1.2	3,985	2,580	468	653	213	511	735	633	772
노원구	555,420	1.2	6,449	4,691	600	947	961	628	1,555	753	1,005
은평구	472,242	1.7	8,065	5,429	813	1,188	201	1,170	2,057	1,282	1,354
서대문	320,258	4.2	13,436	11,839	1,319	811	4,307	1,317	4,085	775	822
마포구	375,142	3.6	13,360	11,401	2,083	1,066	2,015	1,861	4,376	904	1,055
양천구	460,267	1.8	8,218	5,646	1,275	1,129	59	1,533	1,650	1,380	1,192
강서구	574,287	2.1	11,962	8,319	2,103	1,573	151	2,125	2,367	1,990	1,653
구로구	442,165	10.9	48,279	40,530	14,496	3,175	364	11,806	10,689	5,699	2,050
금천구	247,819	12.0	29,660	25,029	9,596	2,113	133	7,307	5,880	3,405	1,226
영등포	398,120	13.9	55,427	47,757	17,039	3,422	293	14,485	12,518	5,994	1,676
동작구	404,076	4.5	18,033	15,412	3,780	1,214	2,743	3,887	3,788	1,672	949
관악구	515,648	5.7	29,270	24,466	6,557	2,288	2,065	6,989	6,567	3,328	1,476
서초구	419,682	2.0	8,292	6,667	1,209	833	153	2,057	2,415	568	1,057
강남구	532,469	1.8	9,762	7,985	1,683	1,017	214	2,653	2,418	694	1,083
송파구	628,212	2.0	12,562	9,746	2,872	1,347	84	2,814	2,629	1,412	1,404
강동구	429,416	1.9	8,058	5,893	1,719	1,004	65	1,641	1,464	1,113	1,052

58)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를 재구성하여 인용

59) 2016.11.1. 기준 총인구를 말함.

〈표 Ⅲ-15〉 전국 및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주민 자녀 유형별 현황⁶⁰⁾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서울시	30,761	15,495	15,266	2,666	1,286	1,380	28,095	14,209	13,886
강남구	1,150	595	555	67	32	35	1,083	563	520
강동구	1,128	586	542	76	38	38	1,052	548	504
강북구	1,000	500	500	46	23	23	954	477	477
강서구	1,750	863	887	97	42	55	1,653	821	832
관악구	1,703	876	827	227	116	111	1,476	760	716
광진구	1,169	584	585	86	34	52	1,083	550	533
구로구	2,417	1,186	1,231	367	164	203	2,050	1,022	1,028
금천구	1,423	713	710	197	104	93	1,226	609	617
노원구	1,067	572	495	62	35	27	1,005	537	468
도봉구	815	399	416	43	14	29	772	385	387
동대문	1,087	513	574	97	39	58	990	474	516
동작구	1,042	536	506	93	38	55	949	498	451
마포구	1,113	565	548	58	26	32	1,055	539	516
서대문	869	403	466	47	18	29	822	385	437
서초구	1,088	569	519	31	14	17	1,057	555	502
성동구	1,057	534	523	63	32	31	994	502	492
성북구	1,198	602	596	62	26	36	1,136	576	560
송파구	1,484	774	710	80	39	41	1,404	735	669
양천구	1,293	644	649	101	51	50	1,192	593	599
영등포	2,150	1,112	1,038	474	254	220	1,676	858	818
용산구	1,084	535	549	60	31	29	1,024	504	520
은평구	1,450	735	715	96	51	45	1,354	684	670
종로구	462	243	219	38	21	17	424	222	202
중구	538	257	281	38	18	20	500	239	261
중랑구	1,224	599	625	60	26	34	1,164	573	591

외국인주민 자녀의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치구에 그 자녀들 역시 비례하여, 주로 서·남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60)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를 재구성하여 인용

위 <표 Ⅲ-14>와 <표 Ⅲ-15>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알려 주는 축소판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한국사회 바람직한 다문화도시공동체 정책을 선도하는 책무성에 입각하여, 또한 지난 2014년 미리 선언했던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패러다임⁶¹⁾과 그 실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찰하며, 혁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위 통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등포(13.9%), 금천(12.0%), 구로(10.9%), 중구(8.8%), 용산(7.6%), 종로(7.3%), 관악(5.7%), 광진(5.6%), 동대문(5.1%)구 등 서울시의 9개 자치구들은 이미 다문화지역공동체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위 9개 자치구를 ‘다문화지역공동체’로 공식 규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들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해당 자치구 ‘모든’ 주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 참여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전체로 보아도 다문화 도시로의 전환이 그리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를 다문화사회 표준 도시로 선언하고, 글로벌 상생과 협력의 시민공동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계시민도시 서울특별시>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및 제언에서 별도로 추가 제언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미취학 아동(0~6세)과 취학적령기(7~18세)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를 재구성하였다.

<표 Ⅲ-16>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⁶²⁾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서울시	총계	30,761	2,666	28,095
	0-6	16,705	603	16,102
	7-12	8,908	1,183	7,725
	13-18	5,148	880	4,268

전국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0~6세 미취학아동은 16,506명, 54.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소개한 다문화가구

61) 2014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62)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를 재구성하여 인용

증가세와 맞물려 연도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학령기 다문화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54.3%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다문화영유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별 비중을 따져 보면 국내출생 자녀수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수의 전국적 비율의 구성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수가 국내출생 자녀수의 전국적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의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징적 현상을 반영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펼쳐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보다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언어 소통’의 문제가 다른 시도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중 언어강사 및 다문화강사의 전문적인 양성과 확대를 적극 추구해야 하며, 또한 문화적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단군임을 감안하여, 전담 코디네이터 및 상담사 등의 확대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미래 시민으로서의 다문화아이들을 섬세하게 돌보며, 보편적인 아이들과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공공적 책무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의 유형 및 세부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III-17〉 다문화 학생의 유형

유형	의미	세부 유형	의미	국적
국제결혼 가정자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초혼/이혼/재혼가정 포함)	국내출생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한국
		중도입국	외국 출생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 및 취업 등으로 부모 따라 입국한 자녀	외국 또는 한국(귀화 시)
외국인 가정자녀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포함)	국내출생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
		중도입국	외국인 부모를 따라 국내 이주 자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의에 따라,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서울의 다문화학생(국제결혼·외국인가정자녀)은 총13,924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1.42%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는 (‘12) 0.63% → (‘13) 0.79% → (‘14) 0.94% → (‘15) 1.16% → (‘16) 1.42%로 순증하며,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8〉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

(기준일 : 2016.4.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초등학교	457,591	7,059	1.54%	450,759	8,619	1.91%	436,121	10,226	2.34%
중학교	289,702	1,845	0.64%	266,344	2,077	0.78%	239,912	2,129	0.88%
고등학교(각종)	320,705	1,117	0.35%	308,629	1,194	0.39%	299,556	1,407(162)	0.46%
계	1,067,998	10,021	0.94%	1,025,732	11,890	1.16%	975,589	13,924	1.42%

서울시 다문화학생을 학교 급별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64.7%가 국제결혼(국내출생)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 24.1%, 국제결혼(중도입국) 자녀 11.2%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9〉 2017년 서울시 학교 급별/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단위: 명)

		계	학교급(명)			
			초등	중등	고등	각종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국내출생	9,781	7,276	1,444	1,031	30
	중도입국	1,696	1,048	380	211	57
외국인가정 자녀		3,645	2,709	557	291	88
계 (비율)		15,122 (100%)	11,033 (73%)	2,381 (16%)	1,533 (10%)	175

자료: 서울교육청 2017년 다문화학생 현황 (기준: 2017년 4월)

〈표 Ⅲ-16〉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의 7~18세 취학 연령 청소년들(14,056명)과 〈표 Ⅲ-18〉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13,924명)를 비교해 보면, 132명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 교육과정 상의 학령기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편차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었다. 중앙정부 부처별 통계 편차이거나 통계착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결의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적 각오로, 학령기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고, 보편적인 일반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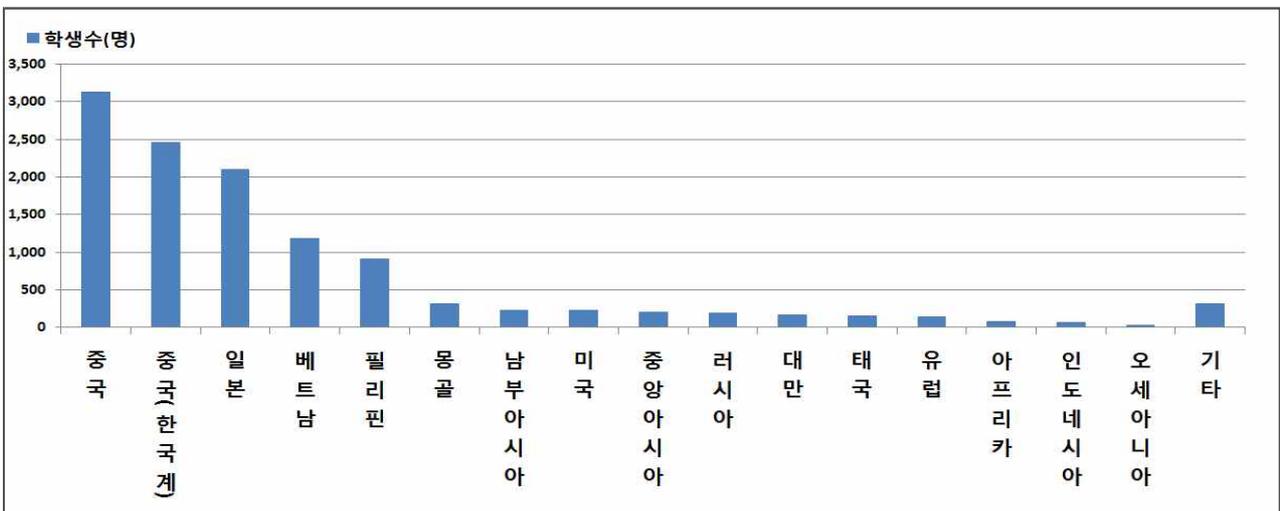
한편, 서울시 다문화학생을 지역별로 재분류하면, 서울지역 다문화학생의 24%는 서남권(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등)에 거주하며, 46%는 서부 및 4개 지역(중부·강서양천·동작관악·동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교 중 7개교가 남부교육지원청 소속⁶³⁾이다.

〈표 Ⅲ-20〉 서울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청 별 현황⁶⁴⁾

(단위 : 명)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학생수	1,018	1,623	3,309	879	1,303	978	1,299	508	1,114	969	924

이를 다시 부 또는 모의 국적별로 재분류하면, 서울지역 다문화학생의 48%는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출신이며, 일본은 15% > 베트남과 필리핀 7% > 몽골 3% > 남아시아 1.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출처 : 2016 서울교육정보통계)

63) 서울시 서남권 지역은 2017년 10월 13일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계획을 공고한 지역으로, 중국어 교육 강화, 초등 영어교육지원, Residential school 등을 통한 영어몰입교육, 고등학교 우수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체험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교육국제화 특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식의 특권교육을 추진하려 한다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교육시민사회의 우려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서울 교육시민사회에서는 다문화시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실태 진단 및 지역사회 공론화의 과정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및 해당 자치구청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시 서남권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 후 이 지역을 ‘다문화의 메카’ 공동체로 추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관련 긴급 토론회. ‘학교와 마을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7.10.30.

64) 2016.4.1.기준일. 서울시 교육청(2017)

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지원정책 현황

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입 및 구성 경로는 노동이주, 결혼이주, 중도입국 및 탈북이주 등 층위가 넓고 다양하며, 그에 따라서 지원 방식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 부처의 미션에 근거하여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 별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정책은 각개 분산되어 있으며, 정책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⁶⁵⁾상 개념도〉



출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012, 11)

한편, 서울시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총괄 기획 운영하는 부서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65)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8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김항식 국무총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은 국경과 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정책,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과 같은 의미다. 다만 국민의 해외이주에 관한 정책과는 구별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다음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외국인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정책목표 아래 146개 세부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추가 설치,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확대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이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비자업무시스템 일원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글로벌 선도학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 우수인재 전자비자 발급 등 정책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인권,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 등 가치를 강조한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정책을 다뤘었다.

관⁶⁶⁾을 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16개 실국 23개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2017, 3)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창조경제기획관(도시농업과, 투자유치과),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일자리정책담당관),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안전관리과), 시립대학교(서울시립대 입학처)와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및 교통방송가족담당관의 협업으로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 및 협업 기관에 따라 지원대상과 방식이 달라 업무 조정 및 효율적인 외국인 다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도, 단순 업무 조정 이외에 서울시 차원의 공식적인 통합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시 다문화 공교육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⁶⁷⁾에서 다문화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은 기존 다문화교육의 동화주의적 경향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으로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동등한 다름’, ‘상호존중적 차이’로 이해되는 다문화교육은 세계화 시대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사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임을 천명하며,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다문화정책 사업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종교 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도 서울시 다문화정책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공식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사업들은 그 실상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와 매칭사업으로 24개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지원하고 있고, 통일부 사업으로 ‘탈북자 및 탈북 청소년 정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법무부 사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등 중도입국자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유입된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그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정책학교’ 등

6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4담당관 1사업소, 1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며, 외국인정책팀과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글로벌센터운영팀 등 4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독립적인 다문화청소년 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사업인력은 총19명이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여성가족정책실

67) 서울시 교육청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은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1과 세계시민교육 담당 장학사1,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사1, 그리고 탈북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관1과 주로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본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관1로 구성되어 있다. 총5명의 구성원들로 서울시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 및 탈북학생교육과 중도입국학생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기관 안내. 2017.11.26.

을 통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및 이중 언어교육 지원 강화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 기반 구축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및 민간이 지원하는 시설들은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탐색교육과 한국문화체험 및 모국 문화체험,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을 수행하며, 별도로 쉼터 등 다문화청소년의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정책 사업들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민간 위탁, 기업 지원 등 운영 주체 및 교육 형태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후, 각 유형 별 다문화청소년 지원 현황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과 시설 현황

2017년 1월 발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시행 과제로 제시하면서, 총 10,118백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정책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펼치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중 언어코치 및 언어발달 지도사들을 배치하여 언어교육을 지원하며, 출산 돌봄 서비스와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면서, 한국어 습득 및 한국인 청소년들과 또래 친구 만들기 사업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III-21〉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예산 총괄 (2017)68)

(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소 요 예 산					증감 (B-A)	비고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합 계		5,557	8,246	8,320	9,782	10,118	336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096	4,596	4,805	5,812	5,927	115	
1-1-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2,096	4,596	4,805	5,812	5,927	115	

68)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2017.1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발췌 인용.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비고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2.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1,509	1,440	1,167	1,163	1,556	393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확대	556	559	534	555	548	△7	
2-1-3	이중언어 교육단계적 확대	178	179	122	125	139	14	
2-1-5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제작	40	40	40	30	30	-	민간재원 60
2-1-6	다문화자녀 보육시설 운영	104	124	166	186	194	8	
2-1-7	다문화자녀 및 일반청소년 교류지원사업	20	2	2	2	2	-	민간재원 2
2-3-3	자녀생활서비스확대	22	33	39	39	27	△12	
2-3-5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290	297	38	-	90	90	민간재원 400
2-4-1	기초학력지원 강화(방문학습)	293	200	220	220	220	-	
2-4-3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6	6	6	6	6	-	
2-4-4	문화통합프로그램 다 같이 놀자 프로젝트	-	-	-	-	300	300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1,254	1,557	1,537	1,735	1,846	111	
3-1-4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조사강화	-	-	-	-	-	-	비예산
3-2-5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175	75	130	174	130	△44	
3-2-7	한국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통합 프로그램	-	-	-	-	-	-	민간재원 60
3-2-8	외국인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10	14	17	20	20	-	
3-3-5	다문화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	10	20	20	16	15	△1	
3-4-4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내실화	759	1,140	1,043	1,198	1,341	143	
3-4-5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270	278	297	297	310	13	
3-4-6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30	30	30	30	30	-	추가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240	210	245	277	342	65	
4-2-2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170	145	200	235	300	65	
4-4-4	자조모임 활성화	70	65	45	42	42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447	432	547	780	430	△350	
5-2-5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확대	70	105	220	405	105	△300	
5-2-7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250	200	200	250	200	△50	
5-3-1	공무원교육원 다문화교육과정 운영	7	7	7	5	5	-	
5-4-1	청소년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	120	120	120	120	120	-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11	11	19	15	17	2	
6-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역량 강화지원	10	10	10	10	12	2	
6-2-2	지자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	1	9	5	5	-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에 주로 해당한다. 언어교육지원과 학교 및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사업들이며, 특별하게는 문화통합 프로그램으로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가 2017년도 신설되었으며, 다문화자녀 및 일반 청소년 교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과 사업들은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인 문화통합 프로젝트나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류 지원 사업은 민간에게 맡기거나 그 예산이 적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기반인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에도 결혼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해당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형성될 조건 및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그리고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수용성 예산삭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미흡한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사회와 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청 등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 관련 시설기관 종사자와 프로그램 참가자들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보다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그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들도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채널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자녀생활서비스사업이나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제6조와 시장방침(시장방침 제153호, 2014.5)으로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을 특별 다문화정책사업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데, ‘인권가치 확산,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다양성 확보, 성장의 공유, 다양한 유형의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등 4가지 가치영역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2016년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은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외국인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힐 것과 일부 지역주민 간 갈등소지 및 인권침해 개연성 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정책 수행의 여건으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인권침해 피해자,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에서 일자리 경쟁자, 복지수혜자로의 인식변화) 및 ‘다문화 수용성’으로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및 조선족을 한국국민으로 느끼는 서

울시민의 비율이 감소'('10년/15년 비교 (결혼이민자)24.7%→13.3% (다문화자녀)35.9%→24.9% (조선족)17.9%→10.7%)'하고 있는 현실(윤인진, 2016)⁶⁹⁾을 반영하여, 2017년 3월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을 4대 비전 가치 영역에 따라 14개 정책과제와 95개 단위과제로 12,466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핵심 과제로 재분류하면 아래와 표⁷⁰⁾와 같다. 단위 사업 건건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서와 유사하므로, 특별하게 별도로 언급하자면, '문화다양성' 가치 비전의 신규사업으로 ⑭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가 498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전시성 행사로 지양해야 한다. 가령,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할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가치 확산' 가치 비전의 인식개선 사업 6가지에는 31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내외국인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등 6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다문화생태계 조성 사업의 총예산이 74백만원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일회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배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일회성 정책 사업은 폐지하고,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근본 사업으로 현재의 다문화 당사자 및 일반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과 외국인주민 시민_되기 아카데미와 같은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 교육 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9) 윤인진,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세계한상문화연구단학술지, 2016

70) 2017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시행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7.3. 자료 인용

□ 인권가치 확산(20)

정책과제	단위사업명	'17년 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비고
인권보호 강화 (13)	①시립 외국인 주민 센터 설치	1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 운영	6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인권지킴이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통합
	④영주자격 외국인주민 복지체계 개선	400	교통정책과 외	장기과제
	⑤외국인 근로자 감염병 관리사업	40	생활보건과	
	⑥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이동상담 서비스	3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⑦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9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⑧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31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⑨근로현장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9	안전관리과	
	⑩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이력관리제	-	토목3과	신규
	⑪이주여성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⑫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담당관	신규
인식개선 (6)	⑬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감수성교육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⑭다문화 사회 인식개선캠페인	1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⑮학교·직장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1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통합
	⑯공무원다문화이해교육	5	인재개발원	신규
	⑰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9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신규
	⑱다문화자녀-일반청소년 교류지원	5	청소년담당관	신규
인권증진 기반조성 (2)	⑲외국인주민 인권상담창구 운영강화	10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통합
	⑳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2,211	여성정책과	신규

□ 문화 다양성(20)

정책과제	단위사업명	'17년 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비고
참여확대 (4)	①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운영	6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모범외국인 주민 표창 및 홍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서울타운미팅 개최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화다양성 증진(10)	⑤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운영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⑥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⑦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확대	81	서울도서관	
	⑧외국인을 위한 eFM방송 제작·운영	258	교통방송	
	⑨외국인 역사문화교실 운영	14	서울역사박물관	
	⑩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0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⑪자조모임 및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6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⑫다문화 인식개선 축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⑬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명절한마당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⑭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	498	국제교류담당관	신규
다문화생태계 조성 (6)	⑮내·외국인간 문화교류를 위한 전용공연장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⑯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⑰글로벌콘서트 개최	2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⑱외국인 벼룩시장 개최	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⑲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기과제
	⑳다문화가족농장 운영	8	도시농업과	

□ 성장의 공유(19)

정책과제	단위사업명	'17년 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비고
인프라구축 (14)	①외국인주민지원시설 혁신적 개선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기과제
	②한국어고급반 운영확대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외환송금 수수료 및 환전우대서비스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역량 강화	8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홈페이지 및 앱으로 정보격차 해소	1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⑥외국인주민정책 홍보	3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⑦외국인주민 집수리사업 지원	20	주택정책과	
	⑧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1,046	보건의료정책과	
	⑨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57	보건의료정책과	
	⑩외국인주민 임대주택 지원 검토	150	주택정책과	
	⑪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1	토지관리과	
	⑫ 버스정류소 앱(웹)을 통한 다국어서비스 제공 추진	15	버스정책과	
	⑬다드림문화복합시설 설치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⑭외국인관광택시운영	520	택시물류과	신규
책임과 의무 공유 (4)	⑮외국인주민 시민되기 아카데미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⑯세금납부 의무이행 관리 강화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⑰외국인주민 서비스 단계적유료화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기과제
	⑱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3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과공유 (1)	⑲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TF팀 운영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역량 강화(37)

정책과제	단위사업명	'17년 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비고
근로자 창업자 (9)	①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1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외국인근로자 재능기부단 운영	1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외국인근로자지원 시·구협의회 구성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강화 및 국비지원 추진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글로벌비즈니스 상담서비스 제공	4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⑥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2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⑦외국인 창업대학 운영확대	8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⑧외국인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2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⑨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운영	22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유학생 (5)	⑩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⑪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통합
	⑫유학생 실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⑬유학생 글로벌인턴십 운영	9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결혼이민자 (8)	⑭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4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⑮결혼이민자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15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⑯다문화자녀 장학금 지원	17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⑰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⑱가계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⑲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15	은평병원	
	⑳수험생 자녀 진학지도프로그램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㉑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	3,633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자녀 (11)	㉒진학지도 가이드북 제작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㉓시립기술교육원과 연계하여 취업지원	-	일자리정책담당관	
	㉔중도입국자녀 지원 중점기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㉕비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81	투자유치과	
	㉖다문화자녀 방문학습 확대	2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㉗FC서울 다문화축구교실 운영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㉘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발간	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㉙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㉚통합 보육시설 운영	97	보육담당관	
	㉛지역아동센터 다문화자녀 특성화프로그램	55	가족담당관	신규
	㉜다문화자녀 학위취득 지원	6	서울시립대 입학처	신규
중국동포 (4)	㉝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교육	1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㉞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㉟중국동포 밀집지역 관광자원화	11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㊱중국동포 문화이해교육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편, 서울시는 관내에 50개의 통합형 시 지정 다문화 보육시설과 3개의 사립유치원 및 3개의 공립 유치원 등 총 6개의 다문화 어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분리보다는 통합적 환경이 보다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할 때, 이후 다문화어린이와 일반 어린이들의 통합형 시설들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다문화인구 밀집지역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남권과 동남권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국어 종합지원센터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된 사업은 '한국어 교육, 고충상담, 의료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방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구성원 _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간이나 운영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지원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해서 수행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24개소를 설치하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만18세 이하), 한국어 발달평가와 교육(만 12세 이하)으로, 다문화가족 단위를 범주로 한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이며, 25개 각 자치구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센터의 고유 기능으로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돌봄 사업 등을 진행하며, 그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전후가족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사회적 약자 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적 가족지원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중복되는 기관 시설인 것으로 보이며,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향후, 서울시 차원 및 25개 자치구 차원에서의 전달체계 수준별 통합적 운영⁷¹⁾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III-22>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지원조례 현황은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25개 자치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등을 국

71) 서울시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은 10곳(관악,구로,도봉,서대문,서초,영등포,종로,강동,동작,성북)이며, 은평구 등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 운영은 2014. 1. 15.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통합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프로세스이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영등포)와 또한 거점센터로 운영 중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도 적극 모색할 시점이 되었으며, 다른 자치구도 기존 통합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들의 통합 전후 비교 분석 보고서(성북구, 2017. 12) 등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차근차근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자료 검색한 후, 제정일, 개정일 등을 구분하여 총괄 분석한 것이다.

〈표 Ⅲ-22〉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지원조례 현황⁷²⁾

번호	자치구	외국인다문화조례 ⁷³⁾	외국인 조례 ⁷⁴⁾	다문화조례 ⁷⁵⁾	건강가정조례 ⁷⁶⁾
1	서울시	2017.1.5.개정 ⁷⁷⁾			2017.1.5.타법개정
2	교육청	2013.10.10.제정 ⁷⁸⁾			
3	강남구		2016.4.8.개정 ⁷⁹⁾	2011.9.23.개정	2015.7.10.개정
4	강동구		2017.2.22.개정	2016.5.4.개정	2008.11.12.제정
5	강북구		2016.4.8.개정	2016.5.20.개정	2014.12.31.개정
6	강서구			2011.9.27.제정	2011.6.30.개정
7	관악구		2008.8.1.제정	2012.9.27.개정	2009.10.15.제정
8	광진구	2014.1.6.제정			2009.4.7.개정
9	구로구	2014.7.17.제정 ⁸⁰⁾			2006.11.10.제정
10	금천구	2016.7.18.제정			2007.12.28.제정
11	노원구		2008.7.25.개정	2012.6.28.개정	2011.10.6.개정
12	도봉구			2017.9.21.개정	2017.9.21.개정
13	동대문		2014.12.18.개정	2012.9.20.제정	2008.1.24.제정
14	동작구	2013.1.24.전부개정			2009.12.30.개정
15	마포구		2008.12.11.제정	2014.11.20.개정	2016.7.26.개정
16	서대문	2013.6.14.제정			2006.7.7.제정
17	서초구		2008.12.31.개정	2017.7.6.개정	2015.6.11.개정
18	성동구	2015.5.21.제정			2015.5.21.개정
19	성북구		2009.7.10.개정	2011.4.27.제정	2006.10.16.제정
20	송파구		2014.11.20.개정 ⁸¹⁾	2017.11.2.개정	2017.11.2.개정
21	양천구		2014.12.26.개정	2015.6.19.개정	2017.12.28.개정
22	영등포	2014.4.24.제정			2017.11.9.개정
23	용산구		2012.2.29.개정	2012.2.29.개정	2012.2.29.개정
24	은평구	2017.7.6.개정			2017.8.10.개정
25	종로구		2012.7.20.개정	2011.12.30.제정	2013.9.27.개정
26	중구		2017.11.1.제정	2012.12.4.개정	2017.3.15.개정
27	중랑구	2013.7.25.제정			2017.10.30.개정

72)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25개 자치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자료 검색(2017.11.29.)한 후, 제정일, 개정일 등을 구분하여 총괄 분석하였다.

7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4)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75)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6)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5조(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타법개정. 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77)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합(타법개정)하여 운영.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5조(자치법규 정비). 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말함.

79) 일부개정을 의미함. 이하 ‘개정’은 모두 일부 개정.

80) 구로구의 경우, 2017.5.11.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추가 제정.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지원조례 등을 조사 분석하면서, 이러한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통합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들은 여전히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특성,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선주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김자현, 2017) 무엇보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나 이미 진입한 서울시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을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은 복지적 맥락에서 타당하나,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적 관점은 생략되거나 누락된 측면이 있다.

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청소년교육 및 활동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담당관의 밀착된 협력체계(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구축 등 다문화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관계기관 협의체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시스템에는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 당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청소년)들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 관점을 넘어서서 이들의 교육권 등 시민적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이미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시민적 성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적 질적 발전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복지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적 관점에서의 시민으로의 성장, 시민_되기를 위한 지원체계 공고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정책⁸²⁾과 시설 현황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핵심과제로는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및 진로교육 강화, 체험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와 다문화언어강사, 이중언어강사 지원과 이중언어과목 개설 및 이중언

81) 송파구의 경우,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82) 서울시 교육청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안) (2017.1.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어 말하기 대회, 가평영어교육원 체험 캠프 운영 등으로 ‘이중언어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단과 교과과정연구회 운영, 교원역량 강화 및 학부모 교육지원, 관련 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협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⁸³⁾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청소년·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정책학교 7개 사업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와 이중 언어강사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23〉 서울교육청 다문화정책학교 등 주요 사업⁸⁴⁾

분류	사업명		2017년
정책 학교	기초 언어 지원	다문화 유치원	6개 유치원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언어지원	다문화 예비학교	13교
	다문화학생+일반학생 통합 다문화 이해교육 : 차별, 편견 등	다문화 중점학교	18교
	다문화 정책학교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교육부)	2교
		다문화 연구학교(교육부)	2교
문화소통-세계시민양성 모델학교(서울시)		2교	
강사 운영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75교 83명 (초78/중5명)
	이중 언어 교실 강사 배치		38교 43명

다문화 정책학교는 다문화청소년·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 일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 수용성 교육은 다문화 청소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실정과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교육 교재개발 및 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연수원 수준의 원격연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서울형 다문화 직무연수 (기초 및) 심화과정의 개발과 보급이 긴급하다.

83)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외에 ‘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으로 공교육 교육과정에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포함하려는 기획을 실행하며, 서울시 교육청 버전의 ‘세계시민교육’ 인정 교과서를 보급하고, 다문화시대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84)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긴급토론회(2017.10.30.) 자료집 36p 및 서울시 교육청 자료 재구성

한편,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자 심층면접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유입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연계 사업으로 동화정책이 아닌 샐러드 볼 정책을 지향하며, 서울형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센터와 학교, 위탁시설의 연계 교육과 지원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 전담교사는 30시간 정예교육, 학교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교육,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예: 안산 대림)에서의 현장 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다문화학생의 경우 이중 언어교육 및 예비학교를 통한 공교육 적응 후 공식 교육기관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하여,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는데,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한 전담 인력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교육청은 대부분의 위기적 다문화학생을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맡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적 관점의 누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다문화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주 배경에 적합한 다양하고 세밀한 교육과정과 전문적인 담당 교원을 양성해서 확대 배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2013년 10월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 당시와는 사뭇 달라진 현재의 다인종, 다문화 이민사회현상과 그로부터 요구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시민성 교육 등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고, 세계 시민교육 등 다문화학생의 시민_되기 등 시민성 교육지원을 포함한 조례 개정 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의 사립 유치원, 3개의 공립 유치원 등 6개의 다문화유치원을 통해 취학 전 다문화아동의 조기교육을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담당자는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도입국자를 위한 초9, 중3, 고1, 총 13개의 예비학교를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배치 전 학교 적응 훈련 과정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이해 교육으로 초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어(KSL) 교육과정 등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며, 프로그램 이수(6개월+a) 후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일반학생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어울림, 상생의 실질적 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문화중점학교(글로벌문화학교)는 총 18개교(초 9, 중 6, 고 3/ 공립 12, 사립 4, 대안학교 1, 대안기관 1)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위탁형 대안학교 3곳에서 다문화학생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문화학생 직업교육학교를 2개교를 방과후 학교, 토요일(방학)학교 형태로 운영, 교육청이 수강료, 실습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자료: 서울시 교육청)85)

서울시 교육청은 서남권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초등학교의 교실수업 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소통-세계시민양성 모델학교 2곳을 시범운영중이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다문화 강사를 다문화학생이 많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기관의 배치 신청을 받아 총 75개교에 83명(복수인원 배치 : 광희초, 서울다솜관광고(각 5명)) 배치했다. 또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업 활동 지원을 위해 총 38개교 (유 8, 초 22, 중 6, 고2), 43명의 이중 언어교실 강사를 배치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인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의 시설, 운영, 및 실태를 통해 시설 지원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2012년 설립된 단설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이다. 2016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솜관광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전문 직업 교육기관으로 대입 수능시험이 가능한 학력인가 학교다. 2017년 현재 이중 언어 교사 포함(중국어2, 일본어1, 베트남어1, 러시아어1) 등 22명(24명 중 2명 휴직)이 108명의 학생과 함께 하고 있으며 8명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신국가는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 역시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이나 사서교사 배치가 없는 상태이며 학생탈의실 학생샤워실 공용화장실, 학생식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숙사는 없다. 장애인 편의 적정시설을 갖추었으나, 2017년 현재 장애인학생이나 특수교사는 없다. 예산 집행추이를 보면 해마다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편이며, 학생복지와 선택교육비 비중이 낮고 건물을 확충했지만 도서관 등의 시설은 아직 없는 상태다.

〈표 III-24〉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학생현황(2014-2017 현재)⁸⁶⁾

년도	남학생	여학생	총학생수
2014년	54명	50명	104명
2015년	65명	42명	107명
2016년	65명	43명	108명
2017년	63명	45명	108명

* 남학생의 비율이 많다.

85) <http://www.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com> (2017. 11/21.자료 확인)

86)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http://www.sds.hs.ker> 상세정보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표 Ⅲ-25〉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자격종별 교사현황(2014-2017 현재)

년도	남교사	여교사	보건교사	총 교사수
2014년	8명	13명	없음	21명
2015년	7명	14명	1명(여)	22명
2016년	6명	15명	1명(여)	22명
2017년	7명(교감1 포함)	16명(교감1포함)	1명(여)	24명

- *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두 배 정도 많음
- * 2014년은 보건교사와 특수교사가 없음
- * 2015년 이후 보건교사 1명 특수교사나 영양교사 없음

〈표 Ⅲ-26〉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졸업생 진로현황(2014-2017 현재)

년도	성별	전문대	대학	취업	기타	합계	총인원
2014년	남학생	1		1	3	5	5
	여학생	0	0	0	0	0	
2015년	남학생	0	0	4	6	10	27
	여학생	1	6	4	6	17	
2016년	남학생	3	0	2	9	14	30
	여학생	1	3	9	3	16	
2017년	남학생	1	6	7	9	23	34
	여학생	2	2	2	5	11	

- *2014년 졸업생은 모두 남학생임
- *2015년과 2016년은 여학생이 많으며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음
- *2017년은 남학생이 두 배 이상 많으며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
-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은 편임.

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위탁 기관

위탁청소년 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⁸⁷⁾(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서울온드림 교육센터가 있다.

87)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은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다르게 규정되고, 또한 다르게 사용되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정의에 의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1)다문화가정의 청소년, 2)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3)중도입국청소년, 4)탈북청소년, 5)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보장교육 및 지역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착과 통합지원 및 청소년 다문화 역량 강화와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역량개발,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⁸⁸⁾

그리고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⁸⁹⁾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정착과 지원을 돕는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여,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등 다양한 이중 언어교육을 지원하며, 심리 상담과 한국문화 알기 등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도우며, 다문화청소년과 한국 일반 청소년의 문화 교류 사업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4) 민간 기업의 다문화청소년 지원현황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으로 제조업 등 공장을 옮긴 대기업들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선별적으로 언어와 과학 교육 지원 및 다문화 모국 방문 및 다양한 방식의 멘토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LG ‘사랑의 다문화학교⁹⁰⁾’에서는 외국어대학교와 KAIST와의 업무 협약으로 언어와 과학에 재능이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1년 과정의 온, 오프라인 교육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오롱은 2016년부터 시작한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밖에 삼성에서는 외가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모국 방문 사업을 벌이고 있고, 효성, 쿠쿠전자, 국민은행, 삼성 카드 등 여러 민간 기업들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문화, 기획 등의 사업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LG ‘사랑의 다문화학교’와 코오롱의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LG 사랑의 다문화학교는 2009년 LG 그룹과 KAIST가 함께 만든 다문화학교다. 입학 자격은 수학·과학·공학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며, 오프라인 30명, 온라인 30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1년 과정, 2박 3일 국내 캠프, 우수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인 청소년 교육의 범주가 아닌 선별적 우수

88) 2006. 04. 개원한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를 설립근거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89) 2015년 9월에 개소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공동 설립하였고,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귀화시험, 진학지도,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역사 알기 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90) 『LG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언어 분야와 과학 분야에 꿈을 키우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해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언어교육과 과학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협력기관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KAIST를 각각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KAIST에서 교육하는 '과학 인재프로그램'은 과학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 가정 우수자녀들에게 기초과학, 문화기술, 글로벌 리더십 등 과학인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 창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한 언어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부모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이어받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긍정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⁹¹⁾은 코오롱이 2016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같은 배경을 가진 멘토의 상담과 특별활동을 통해 도움을 준다. 코오롱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꿈을 잡(Job)아라'를 진행하며, 코오롱 계열사 인턴제도와 연계해 직업탐색 및 진로설계를 돕고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지원정책은 주로 결혼이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학생의 시민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 정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문화청소년·학생들 각각의 생애사를 고려하여 각각의 처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발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중요법적인 일회적이거나 단편적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들 성장발달을 고려한 연속적이고, 중단기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나 교육청의 현재적인 인력 구조로는 다기·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기관별, 또는 기관내부의 각 부처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미흡함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편차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다문화의 층위와 계층이 넓어짐에 따르는 왕따 등 소외 학교생활 문제부터, 나아가 학교 밖 사회참여활동과 각자의 적성에 근거한 진로(설계)교육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미흡한 감수성과 수용성의 문제 및 담당 교사들의 현장 적응 전문성의 부족함으로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91) 코오롱뉴스 [https://www.kolon.com/news/newsList.do\(2017. 11/23. 16시 33분\)](https://www.kolon.com/news/newsList.do(2017. 11/23. 16시 33분))

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서울 교육청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학업 연계 관련한 공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기 중 편입이 어려워 각 지역 지원센터로 연계해주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각지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복지 망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지만, 일부 대기업과 기관들은 청소년의 욕구와 바람을 매우 경쟁적 방식으로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우수 인재를 특별하게 선발하는 것에 집중하며, 시혜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사실, 민간 대기업들의 이러한 ‘다문화 우수학생 선발과 특별 교육’은 승자독식의 강고한 한국 경쟁교육 현실에서 또 다른 방식의 특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특출한 다문화청소년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열패감을 주기도 하며, 게다가 일반 한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는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적 책무성 회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문화 관련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도 좋은 복지 사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민과 관, 관과 대학 및 기업들의 협력적 다문화정책사업 운영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및 민간단체 및 각 자치구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각 센터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청소년 동아리나 참여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아울러, 상급학교진학이나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며, 그 정보 통로 역시 비공식적이고 협소하며, 진로교육과 적성, 미래 탐색 교육 역시 미흡하다.

위와 같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다문화청소년·학생지원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당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 외국인주민, 또는 1%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96%, 100% 모든 한국인, 청소년들을 위한 ‘모두’의 다문화교육으로 대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진흥과 다문화청소년·학생의 교육적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학생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미비하다.⁹²⁾ 반면, 경상

92)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규정함. 9개 조례안 중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운영 관련한 7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로 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가족 및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는 현재 중점학교의 지원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남도 교육청 조례⁹³⁾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례⁹⁴⁾에는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들 및 미취학 청소년을 포함한 학업중단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의 범위 확대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학생 중복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현재 다문화 관련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교육부⁹⁵⁾,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또한 중앙 해당 주무부서와 연계된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자체와 시설들의 다문화정책 사업들 역시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또한 지방정부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학생 입장에서 볼 때 특정한 이해와 요구를 어느 공공기관과 상담 확인해야 하는 지 헷갈리며, 현장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만 중복된 사업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거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차원 및 25개 자치구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 수준별 통합적 운영⁹⁶⁾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경우 장학사 1명과 다문화 코디네이터 3명이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교육, 정보제공, 홍보, 기타 다문화가정상담 및 (주로 중도입국) 청소년교육을 진행하기에 벅찬 현실이다.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담당 주무부서인 다문화가족과의 경우 과장과 팀장 각1명과 이에 따른 담당 주무관을 10명 이상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3)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12조로 일반학생의 다문화인식 개선교육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94)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이해교육 실시에 관련한 12조로 다양한 문화 인정하고 존중의 의미로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5)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② 한국어 교육과정(KSL)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③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교육 강화, ④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강화, ⑤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⑥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96) 서울시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은 10곳(관악,구로,도봉,서대문,서초,영등포,종로,강동,동작,성북)이며, 은평구 등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 운영은 2014. 1. 15.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통합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프로세스이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영등포)와 또한 거점센터로 운영 중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도 적극 모색할 시점이 되었으며, 다른 자치구도 기존 통합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들의 통합 전후 비교 분석 보고서(성북구, 2017. 12) 등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차근차근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은 이들이 보편적 시민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시민으로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편적인 청소년정책과 제도로써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서울시의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의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시민-되기를 포함하여, 우리 시대 보편적인 청소년의 성장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과 각 나라별 언어 공문 발송 및 다문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및 활동 공간과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IV.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 실태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 및 사회참여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참가자는 총 20명으로 이주배경 부모를 둔 다문화청소년이 5명, 한국배경 부모를 둔 청소년이 2명, 이주배경 부모가 7명, 다문화 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6명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모는 중국(재중동포), 중국(한족), 필리핀, 북한 등이다. 그 가운데 국내출생 청소년은 2명이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3명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모두 중국 출생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 신분은 아직 안정된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국배경 청소년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교하기 위하여 2명이 포함되었다. 한국배경 청소년은 비록 부모가 이민 배경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미세한 맥락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다. 한국배경 청소년 가운데 1명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이주배경 부모는 몽골, 네팔, 필리핀, 베트남, 북한 등이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이주배경 부모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혼한 이주배경 부모는 두 명, 사별인 경우가 한 명이다. 7명 모두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험이 있으며 그 가운데 2명이 중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부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고 일시적으로 이주배경 부모의 고향에 위탁하여 기르다가 다시 데리고 온 경우가 1명 있다. 자녀의 학령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이주배경 부모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자녀는 없다.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시설, 그리고 청소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책임자에 관해서는 심층면접과 함께 서면 질문지 방식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2017년 10월 연구진의 세미나를 통하여 인터뷰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면접 실시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남짓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두 명 혹은 세 명을 함께 인터뷰하는 FGI 방식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언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면접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FGI 방식은 각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인사와 내면세계를 깊게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층면접을 1회 이상 하지 못한 점도 보다 깊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심층면접이 1회 이상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20명의 심층면접 가운데 인터뷰가 잘 이루어진 대상은 이주배경 부모였다. 이주배경

부모는 대부분 한국생활이 십여 년 이상 되고 직업 생활을 오래 했을 뿐 아니라 이주 배경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깊이 관여해 왔다. 이주배경 부모의 특수한 배경으로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심층면접 참가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⁷⁾

〈표 IV-1〉 심층면접 참가자 소개

번호	분류	이름	나이	성별	국적	부모/부부(남-녀)	한국입국	학력/소속
1	청소년	미경	14	여	F-2	중국(동포)-한족	2017	한국어과정/ 대안학교
2		가은	22	여	F-4	한국-한족	2016	한국어과정/ 대안학교
3		준형	22	남	F-1	한국-중국(한족)	2012	한국어과정/ 대안학교
4		성진	19	남	한국	한국-필리핀(귀화)	국내출생	고등3/ 일반학교
5		정수	18	여	한국	한국-한국	국내출생	고등2/ 대안학교
6		은정	17	여	한국	한국(북한이주민)- 중국/한국	국내출생	고등2
7		미희	18	여	한국	한국-한국	국내출생	고등2
1	부모	바야르	40	여	한국	한국-몽골(귀화)	2003	지원기관실무자
2		카시	39	남	네팔	네팔-한국	1997	자영업
3		경민	40	여	한국	네팔-한국	국내	자영업
4		사비나	53	여	한국	한국-필리핀(귀화)	1998	자조모임실무자
5		수희	41	여	한국	중국(동포)-한국(북 한이주민)	2002	인권단체실무자
6		남수	53	여	한국	한국-중국(동포)	2003	인권단체대표
7		영순	34	여	한국	한국-베트남	2002	공장근무
1	실무	1	55	여	한국			여성쉼터
2		2		여	한국			다문화교육지원
3		3		남	한국			다문화행정지원
4		4	33	남	한국			대안학교실무
5		5		남	한국			시민단체실무
6		6	64	남	한국			퇴직중등교육자

97) 본 연구 보고서에 적시된 심층 면접 참가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심층면접은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장소는 이주배경 청소년 혹은 부모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곳,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만나기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심층면접 참가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자료는 녹음한 후 녹취를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나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이 진행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 심층면접 일정

날짜	대상	시간
2017년 11월 1일	실무1	40분 (전화인터뷰)
2017년 11월 2일	청소년4 정수	30분
2017년 11월 9일	청소년3 성진	30분
2017년 11월 9일	부모4 사비나	1시간
2017년 11월 16일	부모5 수희	40분
2017년 11월 17일	청소년1 미경	40분
2017년 11월 17일	청소년2 가은	40분
2017년 11월 17일	청소년3 준형	40분
2017년 11월 17일	실무4	서면 질의
2017년 11월 17일	부모2 카시	2시간
2017년 11월 17일	부모3 경민	1시간
2017년 11월 18일	부모1 바야르	1시간
2017년 11월 18일	실무3	1시간
2017년 11월 20일	실무2	1시간
2017년 11월 20일	실무5	1시간
2017년 11월 25일	부모6 남수	1시간
2017년 12월 1일	청소년6 은정	40분
2012년 12월 1일	청소년7 미희	30분
2012년 12월 2일	실무6	30분
2012년 12월 5일	부모7 영순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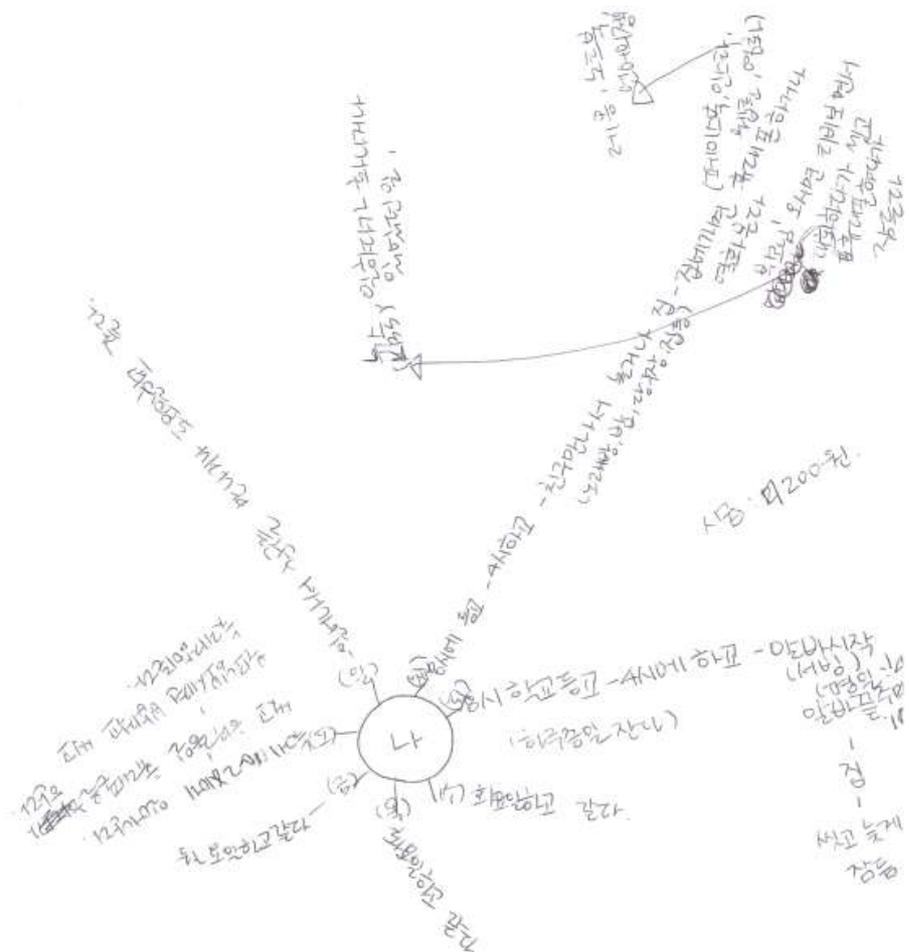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속해 있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세 명이고 위탁형 대안교육센터에 다니는 경우가 네 명이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성진, 은정, 미희이다. 성진과 은정은

이주배경 부모이고 미희는 한국배경 부모이지만 세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미묘한 유사점이 있다. 바로 이들은 학교생활에 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일주일을 그린 그림에서도 학교생활은 아주 간단히 묘사되었다.

〈은정의 일주일〉은 거의 같은 일과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아닌가였다. 은정의 하루는 8시에 학교 등교로 시작하여 4시에 하교를 했다. 그 사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적지 않았다. 은정의 일주일은 아르바이트가 있는 이틀과 아르바이트가 없는 사흘로 나누어졌다.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하교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갔다.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4시에 학교가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한 후 아홉시, 열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토요일 하루 정도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정이 이동한 동선을 보면, 집, 학교,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공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V-1 은정의 일주일〉



〈그림 IV-2 미희의 일주일〉

<p>월요일 - 7시에 일어나 학교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등교 - 4시 하교] 하루종일 취침 및 핸드폰 - 5시부터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 - 9시 아르바이트 퇴근] 4시간 [4시~7시50분 - 10시정도 집도착 - 2시까지 핸드폰 및 자유시간 - 2시 취침] 상담, 영화, 피트니스, 그라 	<p>수요일 - 7시 학교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등교 - 4시 하교 - 5시부터 알바 - 9시 퇴근 - 10시 집도착 - 2시까지 자유시간 - 2시 취침
<p>화요일 - 7시 학교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등교 - 4시 하교 - 5시부터 아르바이트 - 9시 퇴근 - 10시 집도착 - 2시까지 자유시간 - 2시 취침 	<p>목요일 - 7시 학교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등교 - 4시 하교 - 5시부터 알바 - 9시 퇴근 - 10시 집도착 - 2시까지 자유시간 - 2시 취침
<p>금요일 - 7시 학교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등교 - 4시 하교 - 5시부터 아르바이트 - 9시 퇴근 - 10시 집도착 - 2시까지 자유시간 - 2시 취침 (피복) 	<p>토요일 - 9시에 아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까지 등교 준비 - 11:30부터 알바 - 2~6까지 밤 - 9:30 퇴근 - 11 집도착 - 2시까지 자유시간 - 취침
	<p>일요일 - 3시 아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까지 핸드폰 - 12시 취침 취침 - 12시~2시까지 핸드폰 - 2시 취침 <p>피복, 영화</p>

미희는 일주일을 한번 그려보라는 말을 듣고 글로 적기 시작했다. 미희는 등교 전 일과로 7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미희 역시 8시 등교하여 4시에 하교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관한 기술을 마무리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은정은 '하루종일 잔다', 미희는 '하루종일 취침 및 핸드폰'이라고 적었다. 미희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다. 미희의 생활은 하루종일 잠을 자는 학교생활과 저녁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 두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그나마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서이다. 미경, 가은, 준형은 대안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들은 열 시까지 센터로 와서 열두 시까지

한국어 수업에 참가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 이들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센터에 더 있지 않아도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일주일을 그리며 준형을 제외하고는 센터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센터에서는 한국어 수업 뿐 아니라 검정고시 교육도 실시한다. 중학과정까지 하고 들어온 가은은 아직 검정고시 교육반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은은 한국에 온 지 일 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았다. 중학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고등과정을 한국에서 마친 준형이 그나마 한국어가 나은 편이었다.

〈그림 IV-3 대안교육센터의 일주일 시간표〉

301호 강의실		월	화	수	목	금
10:00	~ 11:00			다정한국어 2A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다정한국어 3B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검정고시 교육		
17:00	~ 18:00					

302호 강의실		월	화	수	목	금
10:00	~ 11:00			다정한국어 3A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다정한국어 5A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다정한국어 1B		
17:00	~ 18:00					

이들은 비록 교육센터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주 중에 센터에서 한국어 외 학습이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 교육센터의 시간표를 보면, 대안교육센터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국 일반 학교 청소년이 이 시기에 학습하는 교과와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간표에 충실할 때 사실상 중도입국 청소년의 총체적인 발달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

“학교에 ‘1인 1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힘들거든요.” (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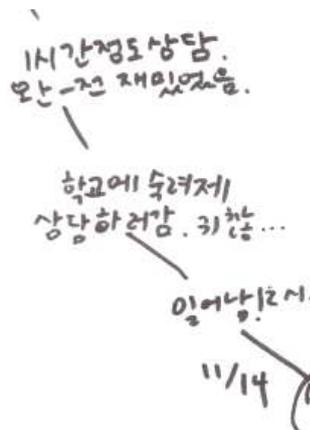
미희가 다니는 학교에는 자기가 알아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일 년 동안 스스로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권장하였다. <1인 1 프로젝트>는 매우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희는 이 프로젝트를 신청하지 않았다. 힘들거라 생각했다. 청소년들은 교과 학습에 관한 흥미는 고사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교육센터의 시간포나 청소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비록 몸은 학교에 있어도 생활 패턴은 학교생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이나 활동은 이들의 의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산하는 영역이 아니었다.

“학교는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교과를 통해 지식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바른 생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가르치는 거지요.” (실무6)

교육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실무자의 말처럼, 학교는 청소년이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성진, 은정, 미희가 다니는 학교는 물론이고 미경, 가은, 준형이 다니는 교육센터도 청소년에게 이곳이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 있고 중요한 곳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활 어디에서도 지식에 관한 관심이나 열중, 학습에의 참여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의 학교 영역에는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4> 정수의 일주일1



청소년들의 학생생활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과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교사의 도움이나 지원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나마 교사의 도움이 그려진 것은 정수의 그림에서이다. 학교 교사가 청소년의 그림에 등장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것은 정수의 그림이 유일하였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학교의 시선, 교사의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은 학생은 학교생활 잘 적응 못하는 학생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많고 좀 처진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고를 많이 치는 학생은 솔직하게 싫었어요. 적응 못한다고 해서 사고치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적응 잘 하고 사고도 잘 치는 학생도 있고 학교생활 못하면서 사고도 안치고 조용히 존재감 없이 그런 학생이 심적으로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실무6)

실무6는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잘 적응 못하는’ 학생의 예로 말했다. 혼자서 밥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창피해서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학생을 말한다. 실무6은 교육자로서 이런 학생을 측은히 여기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무6은 ‘사고를 치는 학생’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런 학생을 싫어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청소년은 상당 부분 이미 성인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떠올리는 단어는 ‘미성년자’, ‘할 수 있는 게 제약되어 있다’, ‘학교 규칙 지키기’ 등이었다.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은 교육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질서를 지키고 예의와 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은 등교 시간을 지켜야 하고 학교 시간 중에는 허락 없이 수업을 빠지거나 교문 밖을 나가면 안된다. 학교에서 흡연을 하면 안되고 염색과 색조 화장을 해도 안된다. 심지어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복 위에 후드티를 입는 것조차 금지하였다. 이런 일부의 학교 교칙에서 보더라도 심층면접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이 실무6이 싫어하는 ‘사고를 치는 학생’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 뿐이다. 이들이 그나마 학교를 뛰쳐나오지 않고 그 영역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잠과 핸드폰’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관한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와 실무6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제 친구 한국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한국친구들 왕따 그런 거 있어요. 말하면 너는 나라 우리와 달라. 그런 얘기해요. 친구가 한국사람과 얘기 안해요. 애도 싫어해요. 그냥 수업만 하는 거예요.” (가은)

가은의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다. 실무6은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다문화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그 학생에게 더 잘 대해준다고 하였다. 실무6이 근무한 학교는 그렇게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정이라고 할 때, 가은의 친구가 다닌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무6의 말과 달리 가은의 친구는 왕따를 심하게 겪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밖 생활 실태 분석

가. 가정생활 - 부모관계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4 성진이나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부모 1,2,3은 자신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거나 자녀가 다문화가정 출신 부모를 가졌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거나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진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쉼터에서 어머니와 여러 해 살았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성진은 한국 일반 청소년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녔고 쉼터를 나온 후에는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성진은 자신이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해서 한국 일반 고등학생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필리핀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지 않았다. 아들은 한국사람이고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재능을 키워주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사비나는 아들이 원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을 존중한다. 부모가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주배경의 부모 바야르, 카시, 경민, 수희의 경우, 바야르는 모두 자신의 모국 정체성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녀가 학교와 사회에서 부모의 이주배경으로 인하여 혼란과 왕따를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고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모국의 생활풍습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하며 이주배경 부모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비나, 바야르, 카시, 경민, 수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의견대로 하기보다 자녀의 관심과 의견을 존중하였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도움을 주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주배경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힘들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일반 청소년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편이며 학교생활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생한 청소년과 달리 중도입국청소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먼저 이들의 체류 신분부터 안정적이지 않았다. 미경, 가은, 준형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났다. 가은과 준형의 어머니는 한족으로 준형은 5년 전에 가은은 일 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 가은의 비자는 F-4로 체류에 걱정이 없지만, 준형은 F-1로 입양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과 생활에 제약이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합류한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은은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말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준형 역시 현재 함께 사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미경 역시 아버지에게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다. 은경은 아버지를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다지 말하지 않았다. 미경은 어머니에게 가수가 되겠다며 춤과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자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미경은 어머니가 반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이 의기소침해졌다.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희망을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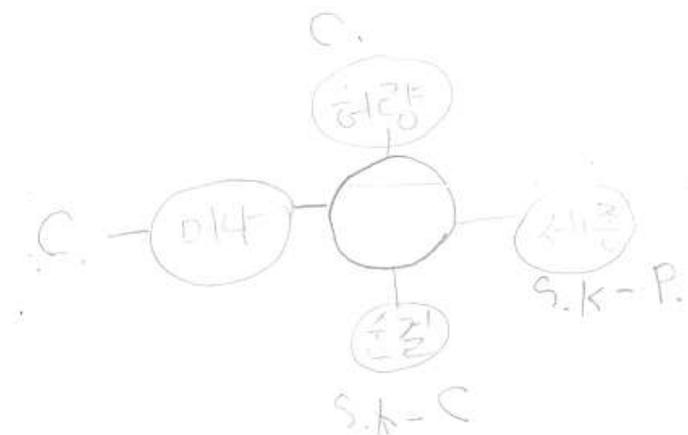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심리적인 지지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의 생활 양상이나 활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지지와 친밀성이 긴밀한 청소년은 자신의 이주배경 조건을 의식하지 않거나 일반 청소년의 조건과 차이를 느끼거나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신과 부모의 이주배경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부정적인 함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나. 친구 관계

청소년 시기는 부모보다 또래 집단, 친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또래 집단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곳, 중국에 있는 친구이거나 현재 다니는 대안 학교 학생이 주를 이루었다. 또래 친구는 이들이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이 그린 친구 관계 그림 속에 담긴 청소년들의 현 상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경의 친구 관계

〈그림 IV-5〉 미경의 친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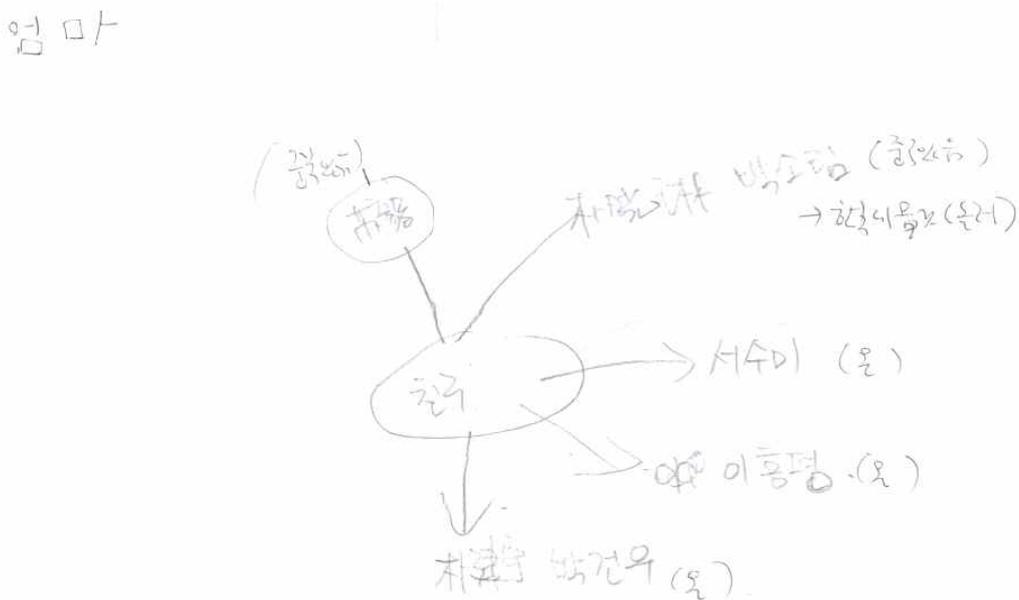


미경이 그린 친구는 모두 현재 다니는 대안학교 학생이었다. 미경이 그린 친구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중국출생 학생이었다. 나머지 한 학생은 필리핀계 어머니를 둔 한국출생 학생이었다. 미경은 중국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한국으로 들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치원 삼 년을 보낸 후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마친 후 2017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 왔다. 한국에 들어온 후 미경은 현재 교육센터를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경이 그린 친구 그림에 중국에 있는 친구가 없다는 점이다. 미경은 많은 시간을 중국 채팅 사이트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온 지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미경의 친구 그림에는 중국에 있는 고향 친구가 없었다. 여기에서 미경은 중국에서 보낸 초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활발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경이 어린 시절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상황은 같은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이후 즉 한국에서 생활한 수희의 자녀와 대조가 된다.

2) 가은의 친구 관계

〈그림 IV-6〉 가은의 친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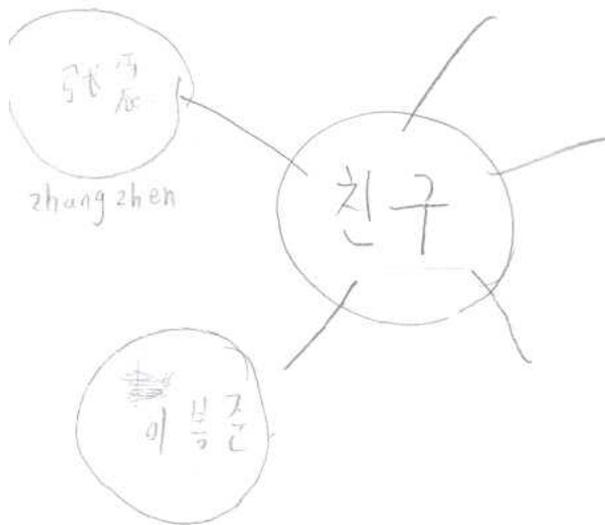
가은은 한국에 온 지 일 년이 지났다. 가은은 중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무척 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던 한국생활이었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는 삼 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가은은 우울증이 심하여 아주 힘들었다. 가은은 중국에서 중등과정을 마쳤다. 가은이 다닌 학교는 외국어학교로 한국에서 유학을 많이 갈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학교였다. 그러나 가은은 부모님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친척집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힘들었다.

가은은 처음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게 짜증이 났다. 가은은 일반 학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일반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왕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가은은 일반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 다니는 교육센터로 들어왔다.

가은은 친구 관계 그림에 중국에서 만나던 친구 두 명을 그렸다. 이 가운데 한 친구는 가은을 만나러 한국으로 놀러 오려고 할 정도로 가까웠다. 가은은 현재 다니는 대안학교 같은 친구도 세 명 그렸다. 가은은 성격이 밝고 활발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였다.

3) 준형의 친구 관계

〈그림 IV-7〉 준형의 친구 관계



준형이 그린 친구 관계 그림은 가은에 비하여 아주 많이 단조로웠다. 준형은 친구 그림 그리기를 힘들어했다. 결국 두 명을 그리고는 더 그리지 못했다. 준형은 중국에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 와서 다문화대안학교에 입학하여 고등과정을 마쳤다. 준형은 대안학교를 나왔지만, 대안학교에서 함께 생활한 다른 다문화청소년을 한 명도 그리지 않았다.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했음에도 중국에서 사는 친구를 그리지 않았다. 준형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에 비하여 친구 관계가 매우 적었다. 준형은 사실상 또래 친구와 거의 관계를 맺지 않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은 사는 지역, 학교, 취미 동아리나 종교 단체 등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생애사 과정과 대비해볼 때 친구 관계의 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분절적인 것은 짧지 않은 이주의 삶 속에서 관계가 시작하기 어렵거나 혹은 시작하여도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잦은 이주와 불안정한 체류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들에 비하여 태어난 지역, 혹은 한 지역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으면서 성장한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성진의 가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형제가 없이 혼자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진은 세심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밝게 성장하였다. 성진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니기 시작한 태권도 도장을 사랑하였다. 그곳에서 선배와 후배, 또래 친구를 사귀었다. 동네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 친구 가운데 같은 학교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많았다. 아버지 없이 형제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아야 하는 성진에게 도장은 형과 동생, 또래를 만나 어울려 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었다. 도장을 통하여 성진은 친구 관계망을 만들어 나갔다.

친구 관계가 원활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컸다. 바야르, 사비나, 수희는 자녀의 또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것을 허용하고 돌봐주었다. 심지어 바야르는 아들이 친구와 관계맺기가 어려울까봐 멀리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한 지역에서 계속 살기까지 하였다.

“저희집이 놀이터예요.” (바야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룹으로 움직이더라구요. 지금은 카카오톡 그룹이 여러 개 있어요. 들은 얘기로는 카카오톡 그룹만 해도 다섯 여섯이라고 해요. 쌤이랑 같이 들어있는 카카오톡.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카카오톡. 컴퓨터 게임 같이 하는 집으로 같이 오는 애들 다르고.” (바야르)

“그 친구들이 유치원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알게 싸웠다 화해했다가 반복적으로 성격을 알게 된 친구들이니까 웬만한 거는.. 동네에서 저희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지 못하는 게 새로운 친구 학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네 뺑글 돌고 있는 거지요.” (바야르)

바야르의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 곳에서 계속 살았고 또 어머니가 세심하게 친구들을 보살펴 주었다. 유치원때부터 알던 친구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그룹을 이루어 친하게 지냈다. 오랜 친구 관계는 이들 사이에 두터운 우정과 연대의식을 만들었다.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가 다문화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역으로 경민 의 경우에도 재해석할 수 있다.

“엄마, 나 친구가 없어요. 애들이 나랑 안놀아요.”(경민의 자녀)

경민은 첫째 아이에게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몇 달 후 똑같은 말을 둘째에게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아이까지 이 말을 하였다. 경민은 세 아이가 모두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남편이 한국사람이 아니라 생기는 건지 걱정이 되었다. 경민의 가정 형편이나 경민 부부의 의식 수준은 매우 안정적이며 진취적인 경향을 보였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원만하며 자녀들의 자존감과 인권을 존중하였다. 경민 부부는 자녀를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양육되는 세 아이가 모두 친구 관계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문화성 그 자체에서라기보다 일반 청소년의 발달과정 상에 직면하는 돌봄과 지원 방식이 어떠한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경민의 세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할머니였다. 다문화가정의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이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에서 바야르나 수희는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였다.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필요와 정서를 이해하고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어떠한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 발달이나 친구 관계 형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부모의 이상적인 양육 조건과 역량에서 경민 부부는 바야르나 수희 등 다른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민 부부의 자녀가 겪은 또래 친구로부터의 소외와 분리 경험은 부모의 의식과 세계관에서 또래 친구의 양육 환경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친구 관계 그림에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는 부모의 이주배경 그 자체에서라기보다 이주배경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조건, 양육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것은 이주배경 부모의 의식 및 생활 조건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뿐 아니라 더 뛰어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한다. 여기서 이주배경 부부가 만들어내는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조건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돌봄과 지원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희는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다섯 살이 되자 한국으로 들러 들어왔다. 이때까지 수희의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수희가 아니었다. 사실 수희는 어머니이긴 했지만, 수년 동안 자녀와 친밀한 교감과 소통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 수희는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노력하였다.

“다섯 살에 와서 그냥 엄마니까 엄마인 거에서 불안해하던 애가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시리즈책도 두 개 되는 거 할부로 끊어서 책꽂이 꼭꼭 박아넣고... 애하고 밤마다 진실게임을 하고... 내 나름대로 애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 파악이 되었어요. 물음을 어떻게 던져야 대답이 온다는 것도 알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봐요. 그리고는 ‘오늘 떡볶이 나왔는데 안매웠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종알종알 얘기하고요. 공부 이야기는 아이가 기분좋은 틈을 타서 공략하는 저 나름의 노하우가 터득됐어요.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거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욕구가 드러나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조직활동가교육도 받고 사회복지학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동학도 같이 전공하면서 이때는 아이가 이런 행동 많이 할 것이겠구나 아니까 재미가 있더군요.” (수희)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지원했는가에 따라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능동감, 유능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미경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다른 양육자의 손에서 자랐다는 조건은 수희의 자녀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경이 한국을 떠나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기 전 3년은 미경의 성격 및 사회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상과 역량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전에 다시 이주와 재정착의 과정에 반복하면서 미경과 수희의 자녀는 사회성에 있어서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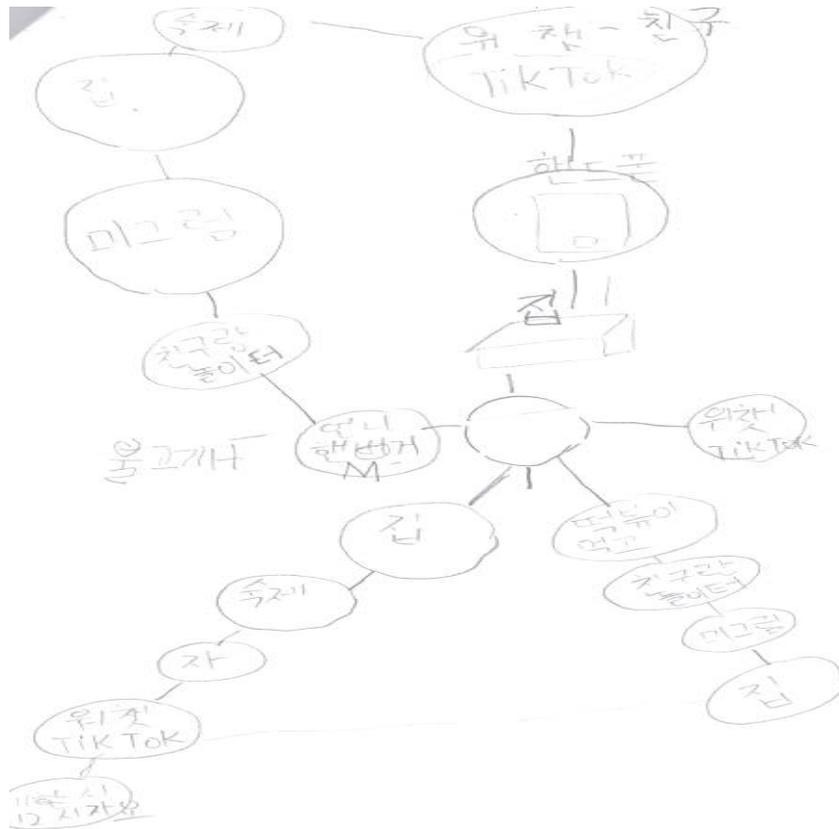
다. 다문화청소년의 일주일

다문화청소년이 가정에서 어떤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과 내면세계를 형성해가는지는 다문화청소년이 그린 나의 일주일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1) 미경이의 일주일

미경은 오전 시간을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보냈다. 대안학교 시간표에 따르면, 오전에는 영어기초와 한국어를 교육하였다. 수업시간에 미경은 책을 보고 따라 쓰거나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나오는 대화를 똑같이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끝나면 미경은 달리 센터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 미경은 시간이 많았다. 친구가 시간이 있으면 친구와 놀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갔다. 친구와 같이 역 근처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사먹기도 하고 근처 놀이터에서 미끄럼을 타며 놀았다. 그 외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아이돌 동영상을 보거나 채팅을 하며 보냈다. 미경이 들어가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아니었다. 미경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본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그림 IV-8〉 미경의 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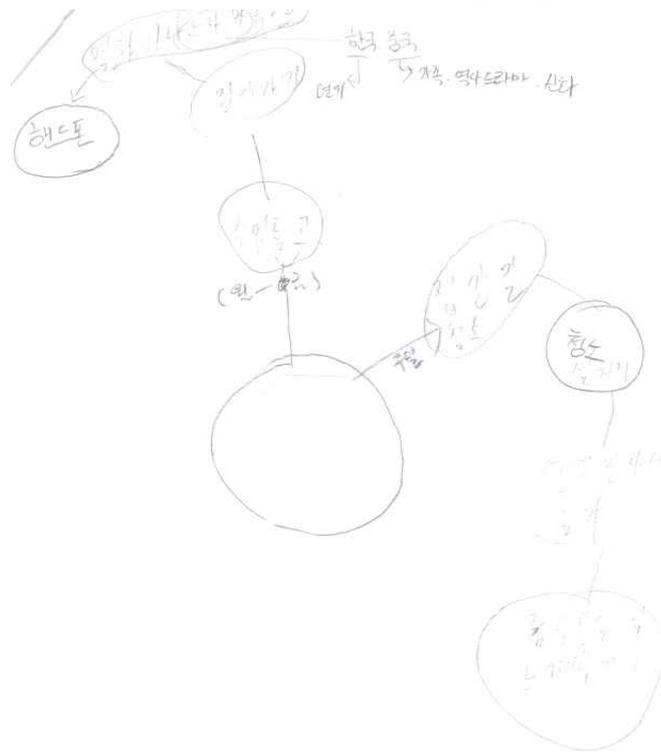


2) 준형의 일주일

준형의 일주일은 아주 단순했다. 미경이나 가은과 달리 준형의 일주일 그림에는 오전에 수업한 것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에 의하면, 준형은 수업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거나 친구와 노는 것 없이 집으로 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았다. 이것은 준형의 친구 관계 그림이 아주 단순했던 것과도 일치하였다. 준형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였다. 준형이 즐겨 보는 장르는 연애 이야기로 중국 드라마는 가족이나 역사 드라마, 신화에 관한 것이었다. 준형이 시청하는 드라마의 분량을 비교한다면,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중국 드라마는 더 세분하여 예시를 들어 말하였다.

준형의 그림에는 준형이 주말에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미경이나 가은의 그림에는 집안일을 하는 그림이 없었다. 준형의 그림에는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과가 그려져 있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였다. 준형이 친구와 함께 가는 곳은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중등과정까지 중국에서 보낸 준형에게 한국 음식은 익숙해지긴 하였지만, 굳이 즐겨 찾아 먹는 음식은 아니었다. 준형은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내면적인 취향과 자기 세계가 있었다.

〈그림 IV-9〉 준형의 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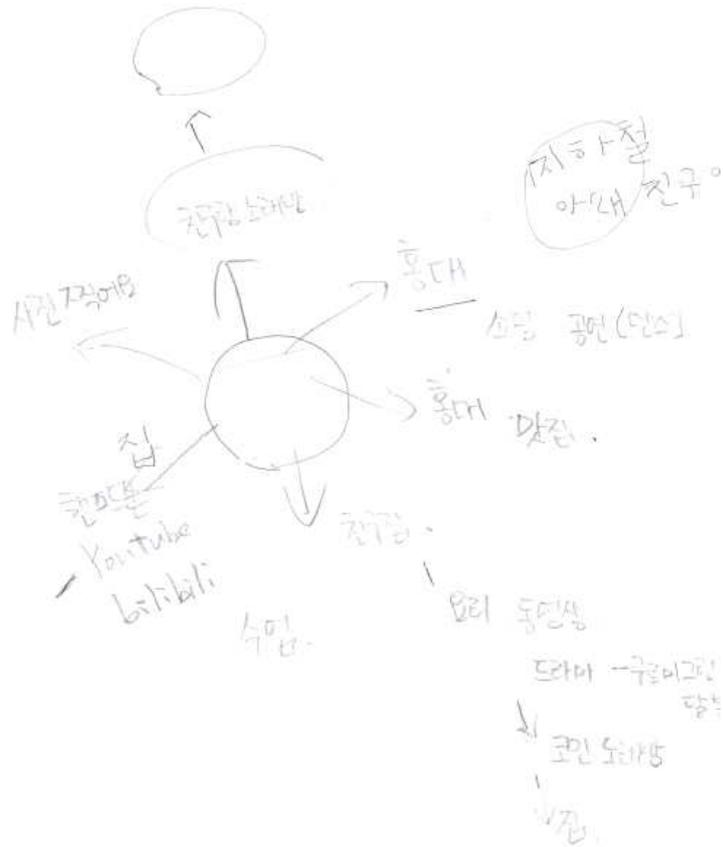


3) 가은이의 일주일

가은의 그림은 이동 공간이 집과 학교에서 홍대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가은은 홍대거리에서 쇼핑도 하고 댄스 공연도 보고 맛집에서 음식도 먹었다. 일주일에 이틀을 홍대 거리를 갈 정도로 홍대알거리를 좋아했다. 또 친구와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친구집에 가서 요리를 하거나 동영상을 보았다. 가은의 일주일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지하철 아래에서 친구와 앉아 놀기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 지금 가은에게 친구는 가족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보인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가은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보냈다. 가은은 아직 한국으로 온 지 일 년이 안되었음에도 센터에서 숙제를 줘서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가은에게 집은 더이상 밖에서 보낼 수 없는 시점이 되어야 가는 곳이었다.

〈그림 IV-10〉 가은의 일주일



4) 정수의 일주일

정수는 미경, 서은, 준형과 달리 자신의 일주일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였다. 또 주어진 종이 안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종이를 더해 가며 그림을 그렸다. 정수는 미희처럼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건네주는 연필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드는 두고를 골랐다. 그림 도구의 차이로 다른 청소년의 그림 윤곽선이 희미했지만, 정수의 그림은 윤곽선이 분명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정수는 그림 옆에 짧게 글을 적었다. 그림을 따라 정수의 감정과 목소리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중층적 표현 기법으로 정수의 그림은 집에서 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그림 가운데 가족이 등장하는 그림은 정수, 미희, 은정의 그림이다. 비록 그림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경, 가은, 준형 모두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모습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이들은 부모와의 교감과 소통이 매우 적으며 충분히 지지와 공감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림 IV-11〉 정수의 일주일



라. 사회참여활동 실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시작하면서 참가자에게 사회참여활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물었다.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생각이 안나요.” (준형)

“노인들 도와주는 거. 아기. 중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아기 돌봐주는 거. 청소. 쓰레기 우리 거리 같은 데 쓰레기 줍는 거. 그런 거 많이 해요.” (가은)

“몰라요.” (미경)

“잘 모르겠어요.” (성진)

“대표적으로는 학교. 두 번째가 동아리. 학원. 스포츠클럽. 친구들과 대화하기.” (정수)

“예를 들면, 미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벽화 그리고 공짜로 캐리커처 그리고.” (정수)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준형, 성진, 미경은 표현하기 어려웠다. 사회참여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활동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부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용어를 듣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표현한 청소년도 있었다. 가은과 정수가 이 경우이다. 가은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경험한 몇 가지 봉사활동을 떠올렸다. 정수 또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동아리활

동,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떠올렸다. 정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직업세계를 경험하거나 직업과 연관된 활동도 사회참여활동과 연결하였다.

심층면접 참가자가 말한 활동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으로 제정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2004년 2월 9일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2014년에 3월 24일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⁹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분류를 보면, 9개 영역에 60여개의 활동이 청소년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다.⁹⁹⁾

심층면접에 참가한 청소년과 부모는 그동안 어떤 사회참여활동을 했는지 떠올려보라는 질문에 몇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였다.

“여기 지난번에 한국 애들 하고 같이 영상팀 재밌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촬영도 하고 끝나고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도 먹고 대개 재밌었어요.” (가은/준형)

“전에 있던 학교에서 배드민턴 배우고 악기. 기타 배웠어요.” (준형)

“학교 봉사점수 때문에 주변에 노인정에 가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성진)

“저희가 동아리 만들었는데 저희끼리 운동하는 동아리 만들었어요. 일학년 때는 산악동아리활동 했어요.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클라이밍하고 산악지도 보고 빨리 찾아가고.” (성진)

“자기들끼리 만들고 가더라고요. 노인정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할머니들이 빵 주드라.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봉사 하고 파출소 봉사하고. 여성 안심 구역이라고 하고 시장 골목 쓰레기 줍는 봉사도 하고.” (수희)

98)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항.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3항 ~ 제5항).

99) 건강보건활동(신체단련활동, 흡연 음주 약물 비만예방활동, 안전 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학교폭력에 방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활동), 과학정보활동(모형 및 로봇활동, 컴퓨터 인터넷활용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교류활동(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모험개척활동(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극기훈련활동, 오지탐사활동, 호연지기활동, 한국의 산수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문화예술활동(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춤 무용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전통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봉사활동(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 구호활동, 재능기부활동, 지도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진로탐색 직업체험활동(청소년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사회생활기술활동), 환경보존활동(생태체험활동, 환경탐사활동, 환경음식만들기 재활용공예활동, 환경살리기활동, 자연지도만들기활동, 숲체험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환경살리기 캠페인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심성수련활동)(여성가족부 2011; 임희진 외, 2014: 15).

심층면접에 참가한 청소년과 부모들이 떠올린 사회참여활동은 모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범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는 활동이었다. 즉 이들이 떠올린 사회참여활동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청소년활동 범주에 속하는 활동으로 굳이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참여활동은 광범위한 청소년활동이면서도 그 가운데 특정한 속성을 담은 활동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청소년이 자리한 바로 '이 삶의 자리'를 구성하는 원리와 작동 방식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탐색하며 행동하는 속성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자리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존속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고 질문의 답을 탐색해가는 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일깨움이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몸에 배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결심했던 게 받는 거만큼 나누어야겠다. 나는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참 고생 안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은 왜 나누는 거에 인색할까.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희)

“인성을 기대해요. 내 옆에도 누가 있고 내 뒤에도 누가 있다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경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리, 도덕 안배워요. 지금 애들은 혼자 기술로 살아요. 파편화되었어요.” (카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수희, 경민, 카시는 약간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의 사회상이 공유되어 있다. 공동체로서의 사회상이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개인화 되어 있더라도 파편화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 이것은 역으로 지금 현재 이들의 자녀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가 바로 존재 자체와 존재 자체가 놓인 삶의 자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타자화된 채 도구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부조리함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인간답고 평화로운 생명 공동체를 향한 열망과 염원은 작은 성취에서부터 자라날 수 있다. 새 세대에게서 활기차고 영롱한 여린 재능의 싹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쑥 쑥 자라난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들 안에서 발견한 즐거운 꿈과 능력을 길러나가며 생명력과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이야기된 이들의 경험은 그렇지 못한 경험을 더 아프게 풀어놓았다.

“노래 부르는 거는 지금도 좋아해요. 노래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노래보다 운동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진)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오학년때 플룻 악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년을 다녔어요. 플룻 가르쳤는데 더 못가르쳤어요. 조금은 있더라구요, 재능이.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플룻도 가르쳐줬는데 제대로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어요.” (수희)

“초등학교 때 수학 좋아하고 학원 안다니면서 수학 과학 팬찮았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공부 힘들다고 운동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렸을 때 노래 잘했어요. 예·체능 쪽으로 가는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말았어요. 너무 비싸다. 또 돈 있어도 인맥 없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래에 재능이 있지만.” (사비나)

한국사회에서 미경, 가은, 준형이 체류 신분으로 불안정하고 불편한 위치에 있는 한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원적이며 중층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성진, 수희, 사비나는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들은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다문화’로 호명하는 것에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낀다. 이들은 다문화란 이름으로 자신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에도 저항감을 느낀다. 경민은 자녀가 학년이 높아가면서 자신을 다문화로 특별히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갖는 의문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였다.

“일 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를 특별히 봐주는 게 좋았어요. 한 학년 올라가자 왜 선생님이 나만 특별히 부르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학년이 올라가자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라고 물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는 다 한국인이고 아빠만 외국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경민)

경민은 아이가 학년이 높아져 가면서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이 가족을 호명하는 방식과 그 함의를 자각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픔과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다문화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특혜가 결국 사회적 낙인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국인으로 일반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며 자신과 일반한국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부모가 있는 반면에 비록 국적은 갖췄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주민의 팍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다문화라는 범주는 양면적 가치를 갖는다. 성진, 수희, 사비나가 공통으로 겪은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가 재능과 꿈을 실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력과 인맥의 미비함으로 감내해야 하는 꿈의 포기, 재능의 포기를 다문화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길 꿈꾼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갈망하는 것은 안정된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에게는 더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회 자

본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특별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기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한국일반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갈망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과 부모가 희망하는 삶의 양식은 설사 그러한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성취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일반청소년의 참여활동은 자신들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현사회의 제도와 양식 자체까지 성찰하고 탐색하며 시민청소년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갔다. 시민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상황에 내재한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방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패러다임 가운데 성장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청소년 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사회참여 흐름이다. 기존 사회가 규율해 놓은 질서와 양식 안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사회의 개선과 향상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가 해마다 열려 왔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소개 동영상에는 이 대회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신에서 기획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제도이면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하게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을 나누는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소개한다.¹⁰⁰⁾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발표팀이 본선에서 발표 경합을 벌이는데 수상한 발표팀의 원고를 보면, 문제제기, 대안정책, 정책 제안, 실행 계획까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조례의 토대도 만드는 등 실제 사회 상황에 변화와 개선을 일으킨다는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등 전 과정이 단순히 문헌이나 책상 작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참여와 실천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100) 2010년 1회 이후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1회 : 학교 주변 안전 및 환경 실태, 의무교육기간 내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빛의 별밤 침공. 2회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기본적 교육권 강화, 아동들에게 희망주기 프로젝트 : 공정 무역에 참여해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3회 : 기숙형 학교의 보건 실태 및 해결 방안, 수도권과 지방간 청소년 문화격차, 통학버스로 통하라. 4회 : 5천 명이 한 길로? 국립중앙박물관 새롭게 만들기, 학교 앞 식품, 푸르게 푸르게. 5회 :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표시, 노인분들, 더 이상 힘든 버스는 No In! 학습 효율성 증진. 등



*제2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최우수상 농촌 일손 부족 문제(101)

그러나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매우 뛰어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무엇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이들의 작업과 활동이 여전히 지도와 관리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나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들 스스로 성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기초하여 문제를 자각하고 인식하며 대응하는가이다. 여전히 이들을 미성숙하며 미완성된 대상으로 인식하며 계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의 또 다른 흐름을 주목하게 된다. 바로 2008년 촛불혁명에서부터 시민저항운동의 한 동량으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청소년활동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금 2016년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던 시민혁명시기에 그 한 동량으로 시민청소년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활동이든 시민청소년활동이든 매우 어려운 현실이 맞닿아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내부 구성은 신분의 안정성부터 그 위상이 다양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안정된 신분을 가진 청소년부터 머무는 것 외에는 합법적으로 어떤 지원과 배려도 허용되지 않는 신분을 가진 청소년까지, 심지어 합법적으로 한국사회에 머무는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체류 신분의 안정성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의 다양성까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존재성의 불안정과 취약함은 결과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와 일상의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이들이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인식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게 하면서 결국 한국일반청소년의 내적 역량과 함께 하기 어렵게 한다. 자기 내적인 세계를 너머서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의

101) <https://youtu.be/a9MKBpLZqSk>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대상 신라면.

상황과 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태도가 길러질 수 있을까? 다문화청소년의 입장에서 한국일반청소년이 제기하는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과 공유를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 앞서 살펴 본 다문화청소년과 한국일반청소년이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활동을 함께 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탐색함에 있어서 이주배경 부모의 지지와 친밀함 속에서 발달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요건을 갖춰 나온 다문화청소년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살에 와서 그냥 엄마니까 엄마인 거에서 불안해하던 애를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진실게임 하고 내 나름대로 애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 파악이 됐어요. 물음을 어떻게 던져야 대답이 온다는 것도 알고.”(수희)

“어느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버스에서 내려서 잠시 얘기를 할 수 있겠냐구요. 내가 몇 개월전부터 너무 헛갈려서 그런대요. 엄마가 도대체 엄마가 한국사람인지 몽골사람인지요. 아.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엄마가 몽골사람이다. 얘기해주려고 했다. 한꺼번에 많은 거 받아들이면 안되니까 자근자근 얘기해주려고 했다고요.”(바야르)

“아이가 오픈 마인드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인도쪽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넘어졌을 때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가 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 부딪쳐도 일어나야 하니까요.”(카시)

이주배경 부모 수희, 바야르, 카시는 자녀가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깊이 공감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현재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였다. 수희는 자녀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한국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아이는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인 줄 알지 사실 엄마와 어떤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지도 못했고 한국말도 서툴렀다. 이제까지 친숙했던 모든 것에서 단절된 채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자녀의 불안한 상태를 아주 깊이 공감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엄마와 새로운 생활에 편안해지도록 전심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수희의 자녀와 미경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생애 조건이 유사한 점이 많다. 둘 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 다섯 살이 되어서야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에서 두 아이는 생애 경험이 달라졌다. 미경이는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고 수희의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 이러한 생애 경험의 차이는 두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자녀 양육 방식을 따르고 싶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자녀 양육의 욕구와 비전을 어떻게 뒷받침 해줄 수 있었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야르와 카시가 겪은 고통과 염려는 한국사회가 이주배경 부모와 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녀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부터 왔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자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도록 돕고 싶은지에 관하여 바야

르와 카시는 원칙을 정해 놓고 적절한 때에 맞춰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자신이 느끼던 막연하면서도 확신이 가는 의문을 꺼내 놓자 아이의 마음결을 따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수희와 바야르의 자녀는 한국배경 청소년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이주배경 때문에 관계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부모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님 나라 사람 돕는 활동을 거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나라를 방문하여 학용품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또 박스를 나르기도 하며 바쁘고 일손이 달리는 부모님을 돕기도 하였다. 그런데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도 일반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소년들이 꺼리는 경우가 나타난다. 남수의 자녀와 사비나의 자녀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들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말이나 생활에서 한국배경 일반 청소년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이주배경이 드러나는 봉사활동, 예를 들면 부모님 단체를 홍보한다거나 이주배경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나 생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 하거나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부모님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수희, 바야르, 사비나, 남수는 모두 모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한다. 이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당당하고 멋진 부모상을 갖게 하며 부모의 이주배경이 부정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인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수희, 바야르, 사비나, 남수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활동이 체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영순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을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영순은 말을 몰라 한국에 온 지 삼사년이 되도록 무척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은 채 힘들게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생활 15년 동안 이주민으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영순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영순이 모국 이주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영순의 자녀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3. 시사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1)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성과 문제 상황을 이들의 이민 배경 부모, 혹은 이민자 당사자인 자신의 조건으로 귀속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

것은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이 한국사회 일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양상을 따라 잘 이루어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청소년 양자 모두에게서 문제의 진단이 올바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이 건강하고 활발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적 조건으로 자신을 구별짓고 가시화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저항감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적 조건에 함축된 부정적 의미와 낙인에 대하여 부조리함을 느낀다.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주배경 부모나 상이한 문화적 맥락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 안팎에서 행복과 한국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과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 청소년의 양육과 지지에 있어서 유사한 결핍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이들이 한국배경의 청소년인가 이주배경의 청소년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총체적 조건이 어떤 상태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에 의하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지각을 하는 등 규칙을 공개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사고를 치는’ 일반 한국배경 청소년보다 더 조용하고 규칙을 따르는 생활을 하였다. 비록 드러내고 사고를 치지는 않지만, 이들은 교과목에 관한 흥미나 성취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사실상 수업을 통해 학교생활의 의미를 느끼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학교생활은 거의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혹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배회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주배경이라는 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일을 나가느라 자신을 섬세하게 돌볼 수 없다는 점이 일으키는 아픔과 위축이 깊이 자리해 있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고통과 비애가 깊이 스며져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에 항의도 요구도 하지 못한 채 홀로 텅 빈 시간을 견디며 감각적인 소비와 즐거움으로 불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웠다. 학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뇌와 불안에 대하여 교사의 이해나 지지를 거의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친구들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지지를 얻었다.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에 의하면, 아직 아르바이트가 어려운 중학교 이하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거나 근처 편의점 혹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으며 놀았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이나 채팅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대부분 일주일에 2~3일을 하루 4~5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과 음식을 사먹거나 놀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활동 범위는 주중에는 학교, 집, 아르바이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은 젊은 층이 많이 가는 거리로 놀러나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가정생활을 분석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부모님도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집에서 이들은 혼자 채팅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었던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과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소망이나 필요를 금지하거나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부모님의 생각과 희망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 스스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4)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와 자신의 이주배경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데에는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와 양육과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님이 일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 특히 부모님 모국의 이주배경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활동에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과 부모님의 '특별한' 이주배경 조건을 '예민하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생활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해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제까지 힘들게 구축한 네트워크와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또래 한국배경 청소년이 자신의 이주배경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에서 아예 벗어나려는 마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의 이주배경에 관한 감정이 양가적이어서 한국사회가 부모님과 자신의 이주배경에 대하여 부정적 낙인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축과 수동적 저항감이 내재해 있었다.

5)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부모나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인하여 본원적으로 다중적이며 혼종적인 특성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안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조건에 담긴 다중적이며 혼종적인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부모의 섬세한 배려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혼란과 불안을 다중적이며 통합적인 정체성으로 내면화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단일 문화 맥락에서 단일 정체성이 일으키는 효과 못지않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6)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우도 사회참여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학교 밖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을이나 지역 거리에서 하는 환경미화 활동, 미래에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체험활동 등을 사회참여활동으로 추정하였다.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동기는 학교의 봉사활동을 채우거나 학교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부모가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경우, 비록 현상적으로는 같은 활동이라도 활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내적인 충만함과 자부심이 향상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자신과 부모의 이주배경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이주배경 특성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식을 생성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7)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는 부모의 세밀한 지원이나 양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의 인식과 이해가 선한 동기의 나눔과 자기 헌신의 차원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활동은 본격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다문화청소년과 부모들은 청소년의 투표권 문제나 인권 조례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다.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자기의 생각을 주제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하거나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기 힘들어 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제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바꾸거나 요구하는 힘이 약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표현력이나 사고력이 위축되어 있거나 미약했다.

정치적 견해와 행동에 대하여 한국 일반 청소년이나 다문화청소년 모두 부분적이며 정확하지 않은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통념화된 사고와 지식이 이들에게 그대로 내면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 상처와 고뇌로 인하여 정치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다룰 여유와 힘이 부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생성해내는 정치 문화적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사회참여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작업이 다문화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의식과 내면세계를 억압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함께 다루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은 이미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말미암은 삶의 면면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넘치도록 경험하였다고 보인다. 이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자아가 각성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의식이 내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이들은 내면의 혼란과 부조리함, 분노와 저항 의식을 표현하고 행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내면세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조언하는 어른도 없으며 이들 스스로 알아나가

는 것도 막연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이들은 감각적인 소비와 즐거움, 채팅이나 쇼핑, 환상적인 영화나 역사 드라마에 몰입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재의 허무와 무거움으로부터 피하고자 한다고 보인다.

이제 이들이 살아 있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체험하고 자각한 자기 삶의 자리를 생애 사적 맥락, 그리고 현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재인식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한국사회와 나아가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와 불의가 작동했는가, 사람의 선한 의지와 노력이 어떻게 현실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는가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노정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된다.

V.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진은 다양한 대상들의 심층 인터뷰 와중에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공동체 B를 방문하게 되었다. 모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사무실을 여는 날이었다. 손님을 맞는 운영진이나 초대받아 간 손님들이나 서로의 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다문화공동체 B의 사업을 소개하자면, 1) 한국정착봉사, 2) 이주여성의 자존감 향상과 재능 발굴, 3)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청년캠프 등을 통한 한국 문화체험, 4)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과 포럼, 5)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등 경제지원활동과 무료상담 및 번역서비스, 6) 어린이 중국어와 성인 추가언어 배우기, 50 플러스 제 2의 인생 설계하기 등이다.

연구 결론의 서두에 굳이 다문화공동체 B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한 우리 사회의 해법 모색의 단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같이 어울려 꿈을 향해 도전하자’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마주한 ‘중도입국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L군의 ‘한국에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살기’ 토론문¹⁰²⁾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저와 같이 한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돈을 벌거나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센터를 알게 돼서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제 꿈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은데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친구는 서류를 다 해왔는데, 규격에 맞지 않은 서류여서 결국 다시 서류를 해오지 않고,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센터에 취미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체육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곳 말고도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센터가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학생들과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어느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친구들이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선주민들이 화답할 차례이다.

102)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개관 2주년 기념 성과발표 및 ‘중도입국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토론회 (2017.9.21.) 자료집; 63-64

1. '모두'를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공적 책무성의 강화

한국 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 또한 없다. 이른바 초국가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대한민국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축소판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미 9개의 자치구가 다문화 지역공동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사회의 다인종,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4%의 다문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단일민족의 신화에 젖어 있는 한국인들에게 단편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다문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이제는 나머지 96%, 나아가 '모두'를 위한 정책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 관점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의 전달체제의 일부로 다문화청소년을 하위 범주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일반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외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담당관의 청소년 팀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교육 사업은 전무하다. 그리고 교육청의 경우 세계시민교육과 열린 다문화교육을 병행하며 세계적인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다문화교육 관련 담당 인력이나 전문적 강사 양성은 다양한 인생서사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은 복지적 맥락에서 타당하나,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적 관점은 생략되거나 누락된 측면이 있다. 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평생교육담당관의 밀착된 협력체계(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 성장발달지원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복지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적 관점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성장, 시민_되기를 위한 지원체계 공고화가 절실한 시대에 이미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의 다문화(청소년) 혁신 정책은 최우선적인 과제로 1)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에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추진 운영할 것과 2) 서울시와 교육청 공무원, 교사, 학부모, 일반 학생들을 '모두'를 위한 다인종,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과 이에 따른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며 3) 다

문화(청소년)교육 관련 전담 공무조직과 전문적 인력(이중 언어강사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등)의 양성과 확대 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우선 과제 수행을 위해 서울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긴급한 범시민적인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청소년)교육 정책은 2017 다문화교육 포럼 및 사업성과보고회에서 공감을 얻은 바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다문화이다!”(장한업)는 슬로건이 잘 대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시대 다문화(청소년)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다른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선한 이웃으로서 민간 기업들은 자신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민간 기업들은 매우 경쟁적 방식으로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우수 인재를 특별하게 선발하는 것에 집중하며, 시혜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사실, 민간 대기업들의 이러한 ‘다문화 우수학생 선발과 특별교육’은 한국의 독특한 경쟁교육 현실에서 또 다른 방식의 특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적 책무성 회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문화 관련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도 좋을 복지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민간 위탁의 경우 엄격한 수행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근거 정비 및 지원체계 개선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외국인 주민 40만 시대에 맞추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울시의 관련 조례들 및 이를 근거로 하는 지원체계들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관련 조례의 경우 통합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각 표준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특성,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선주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다문화공동체로 진입한 자치구(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들에 대해서 '다문화지역공동체'로 공식 규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전체로 보아도 다문화 도시로의 전환이 그리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를 다문화사회 표준 도시로 선언하고, 글로벌 상생과 협력의 시민공동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계시민도시 서울특별시>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 다문화지역공동체 9개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와 연동하여 추진하되, 교육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구안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이주아동의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형 동아리 활동 보장 및 활동 공간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동시 수반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 중앙의 혁신교육지구 민관협의체와 각 자치구 담당자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차원에서의 통합적 운영을 즉각 모색해야 한다. 현재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 자치구는 모두 10곳(관악, 구로, 도봉, 서대문, 서초, 영등포, 종로, 강동, 동작, 성북)이며, 은평구 등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영등포) 및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도 적극 모색할 시점이 되었으며, 다른 자치구도 기존 통합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들의 통합 전후 비교 분석 보고서(성북구, 2017. 12) 등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차근차근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2013년 제정)은 다문화수용성 교육의 전면화와 다문화청소년·학생의 교육적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규정으로 검토한 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학생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례는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이 핵심과제로 추진,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1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들만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국민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및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실행을 법제화하고 있는 기존 조항에 교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신설된 ⑥항이며, 관련 조항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각 항목의 개정 및 신설 일자 는 우리 사회 다문화 교육정책의 흐름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3. 무엇보다 우선,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을 찾고 보자!

정책이나 제도를 다루면서, 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행정사무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찬찬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자 성찰이 먼저 앞섰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 중 취학 연령 청소년들과 실제 공교육에 진입한 초·중·고 재학생을 비교해 보면, 132명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 교육과정 상의 학령기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편차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었다. 중앙정부 부처별 통계 편차이거나 통계착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결의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적 각오로,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보편적인 일반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로 각오를 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보편적 청소년들의 경우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며, 이들을 그냥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으로만 분류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을 다문화청소년들에게도 적법한 범위에서 적용할 것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는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노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시급하며, 아울러 보편적 아동·청소년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을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ODA 체험과 봉사학습부터 시작하자!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자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몽골 배경의 결혼이주여성은 말한다.

우리 아이는 고향 나라에 가자고 조르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출발하기 한참 전부터 동네 친구들과하고 열심히 모여 다니며 무엇인가 모으더니, 고향 나라에 도착해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학용품이지 뭐예요. 무엇을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몽골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들어서 또래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 연필이랑 노트랑 크레파스 등 학용품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것을 동네 친구들과하고 서로 용돈을 모아서 사 왔다고 하니, 참 기특하기도 해서 맘껏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신나 하고, 자존감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더군요. 사회참여활동이요? 어떻게 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한국에 온 지 꽤 오래 되었고, 한국말도 잘 하고 하니 까 이주여성들 곤란한 일 당했을 때 상담도 해 주고, 이주방송국에서 이중 언어로 한국 뉴스도 전하고 그래요. 그 것도 사회참여활동인가요?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엄마 따라서 동네 청소하거나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일 자원봉사에 열심히 함께 하고 그래요.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던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지원 방안 연구는 어쩌면 저 결혼이주 여성의 말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로 가입함에 따라서 국제사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ODA(공적개발원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원조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UN 지속가능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도국과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 대상국은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11개국과 (그 외 지역)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 대상이다. 아시아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다. 이 나라들은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파견 국가들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개최 이후 4회째 운영하고 있는 ‘교육 ODA 콘퍼런스’를 통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 ODA 전략과 한국의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의 주제를 다루지만, 이와 함께

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학교와 도서관 및 교과서 지원과 교사교류 및 교육과정과 교수법 전수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 ODA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진로 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 ODA 및 이와 연동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은 특유의 고유한 다문화적 특성으로, 공적원조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시적이고 거창한 미래 리더로서의 ODA 전문가 양성보다는 우선 이들의 모 또는 부의 고향 나라에 대한 교육적 ODA 사업을 소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위 심층 면접의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처럼 동네 친구들과 서로 용돈을 모아서 엄마 고향나라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매우 필요했을 학용품보다 더 값진 공적원조를 본 적이 없다.

서울시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해야 하며, 그 가운데 위 다문화청소년처럼 일반 청소년들과 여럿이 어울려 동아리를 만들며, 동네에서의 자원봉사와 엄마 고향나라의 소박한 교육적 ODA 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플랜,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들에서 즉각 시행해도 좋을 프로그램이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시행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 ‘외갓집 보내주기’ 프로젝트의 경우, 이주민 엄마들과 자녀들의 항공권을 제공하는 정책과 반대로 외조부모 한국 방문 지원하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한국의 보통 서민들은 역차별을 느낀다(강미옥, 2014)는 점을 고려하며, 소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과 전문 상담사 지원의 필요성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하지만, 결국 어린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은 부모와 함께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큰 기여를 한다. 이것은 다문화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문화가정의 엄마와 청소년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애뜻한 정서를 나눌 시간들이 그다지 허락되는 여건이 아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가족체험주말농장이나 다양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시설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어우러지며 서로가 정서적 지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단한 생애사를 간직하고 있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하는 기관 및 상담사를 다문화청소년이 머무는 공간들마다 확대 배치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에게는 이중 언어 전문 강사 1명보다 전문 상담사 1명이 더 소중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 서울시민대학;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는 다문화수용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시민대학 캠퍼스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대학은 대학연계 시민대학 28곳을 더하면 교육장소만 34곳에 이르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의 교육 분야는 인문, 서울학, 민주시민, 문화예술 등 4개에서 사회경제, 환경생활, 미래 등을 더해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캠퍼스와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에서 다루는 강좌 수도 370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서울시민들의 '시민력'을 높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서울시민대학의 모델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시민대학 가운데 함부르크 시민대학은 언어교육을 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교육과 영어 및 아랍어, 루마니아어 또는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 및 독일어 수화 등 광범위한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적 필요와 직업적인 이유 및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수화를 4단계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추가로 러시아어 수화 프로그램을 새로 시행한다.¹⁰³⁾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시민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에서는 연간 약 14,000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개설강좌 규모로는 이와 비교할만한 교육기관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강현선, 2012)¹⁰⁴⁾

독일시민대학에서 시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고, 직장인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만학도들은 학력 이수 강좌를 듣는다. 이런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시민대학은 정치·사회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이주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를 제공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이민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도 실시하는데, 최근 뮌헨시민대학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뮌헨필하모니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뮌헨필하모니의 연주를 함께 감상한 후,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필하모니 연주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바흐나 말러의 음악은 말하기 연습의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과 독일 문화를 이어주는 가

103) 함부르크주 교육부(2017.12.21.)

104)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독일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2012

교가 되기도 한다. 도시통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뮌헨시민대학 측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프로젝트들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민대학이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시민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서울시가 직면한 다인종, 다문화시대 이주민, 선주민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 통합 교육으로 ‘모든’ 시민들의 시민성 제고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다문화청소년의 ‘시민_되기’ 프로젝트 등을 일반 청소년과 어우러져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기관,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문화 당사자들의 각각의 원거리 통학거리 및 각자가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들(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및 다양한 시민적 권리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울시민대학의 위상과 역할 및 교육과정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시민대학은 그동안 정책마인드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특정기관에만 의존하였던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청소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교육 및 이중적 언어문화 교육 요구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건립한 금천구 독산동의 ‘모두의 학교’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및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다양한 체험형 프로젝트로 통합형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참고로, 독일 시민대학의 프로그램¹⁰⁵⁾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길 제안한다.

105) 뮌헨 시민대학 홈페이지 : <http://www.mvhs.de> 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소개한 도표보다 진화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사전 접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 사회, 정치	건강과 환경
정치와 사회	건강정보
경제와 금융	건강활동
도시계획	시니어를 위한 건강활동
자연과학	요리문화와 와인
철학	환경과 생태학
세계의 종교	외국어
심리학과 생활예술	영어
학습과 기억	프랑스어
연구 일반	이태리어
시니어 시민대학	스페인어
문화, 예술, 창의성	포르투갈어
시각 갤러리	기타 외국어(한국어 포함)
문학과 영화	직업교육과 컴퓨터 활용
어휘와 텍스트 - 작문	기업체 계속교육
연극	경영능력과 영업능력
음악	화법, 의사소통, 리더십
춤	문서작성 기술
예술사와 문화사	컴퓨터 활용
박물관 안의 뮌헨시민대학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여행 속 뮌헨시민대학 - 학습여행 프로그램	성인교육의 교수법과 방법론
회화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이수
조형	철자교육과 기초교육
공예	중등교과이수
유행과 의상디자인	청소년 사회봉사과 과도기관리(학교수업 병행과정)
사진과 비디오	청소년을 위한 시민대학
가로지르기 프로그램	독일어, 이민과 통합
도시의 동서남북	외국어로서 독일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	두 번째 모국어로서 독일어
	통합프로그램

* 강현선, 독일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2012. 도표 인용¹⁰⁶⁾

끝으로, 본 연구를 마치면서, 통합적 복지정책이 선별복지 차원의 지원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¹⁰⁷⁾(성열관, 2017) 고 제언하며, 본 연구는 서울시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패러다임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인가 라는 사회적 의제로 시민사회 공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세계시민도시 서울포럼' 또는 '다문화도시 서울 컨퍼런스' 수준으로, 서울시 이주민들의 모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유럽 선진이민국가들도 포함하여, 21세기 새로운 다문화도시 공동체 모색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공동체의 표준'으로, 뉴욕이나 파리의 다문화도시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21세기 세계시민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혁신적인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기대한다.

106) 원문보기: <http://www.makehope.org/?p=3927>

107)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제32차 교육정책포럼 '문재인정부의 교육복지정책,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문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2014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 집사재, 2015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서울: 강현출판사, 2010.
심정보, 윤혁 외, 『세계교육개혁』 (린다 달링-해먼드 외, 『Global Education Reform』 역서), 서울: 살림터, 2017

■ 연구논문

- 경혜영,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본 다문화이해교육의 실태』, 현장연구:국제이해 교육연구, 2009.
김기영,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pp371-393, 2017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2009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 연구, 2012.
김윤나, 『글로벌시대 시민청소년을 위한 활동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시민청소년 학연구, 2012
김영인,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2010
김용석, 『팬클럽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소녀시대’팬클럽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2012
김자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호순,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기반 확대 : 평가와 전망』, 2017
김현덕,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의 통합에 관한 연구 - 교사교육 과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2009
김현철,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15
김희경, 『EU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찰』, 2008
길임주,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에 관한 한미실태분석』, 미래청소년 학회지, 2009.

- 금혜성, 임지혜,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2010
- 남채봉,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교육에 지니는 의의』, 2013
- 류방란,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정책제안서, 2012
- 박민석 외, 『다문화청소년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 포럼, 2017.
- 박정은,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 공용어와 계승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009
- 배상률,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박충구, 『독일 다문화사회 이행과정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2009
-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파주: 한울아카데미 : 2007,
- 설동훈·이병하,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3.
- 설동훈,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기반 확대- 평가와 참여』, 2017
- 성열관, 『문재인정부 교육복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017
- 심성보,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다문화교육 정책』, 2014
- 심성보, 『정중한 예의와 정치적 예의의 공존을 통한 시민적 예의 교육』, 교육철학연구 36(2): 2014.
- 심성보, 『21세기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 〈2017〉 D 프로젝트 웰컴 투 민주 피아-영화를 통한 민주시민 가치덕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66-106, 2017
- 양계민 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양계민 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윤인진,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세계한상문화연구단학술지, 2016
- 윤혁, 『서울시 청소년관련 정책사업 정비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5.
- 이광호, 『시민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진단』, 한국사회연구, 2010.
- 이은경, 황현숙, 『다문화 정책 연구보고서』, 2016
- 이진석,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2014.
- 이채식 외, 『농촌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2007
- 이혜숙,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방안』, 서울연구원, 2016
- 이창호 외,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임선일 외, 『상호문화주의를 토대로 하는 ‘위탁형 공립 다문화대안학교’서립에 관한

- 타당성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015-02
- 임성일 외, 『다문화 교육협동조합 모델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수시연구 2016-04
- 임성일 외, 『경기도내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분석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수시연구 2016-07
- 임희진 외, 『청소년 활동참여 실태조사 연구』, 2014.
- 장인실,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전망과 과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정책 연구과제2007-7, 2007
- 전병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책연구, 2012
- 정지현 외, 『다문화 리더러시 교육을 위한 유레카 프로그램을 교육적 의미』, 2014.
- 조남익,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래청소년학회지, 2008.
-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2006
- 조영달,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지향: 구성적/성찰적 참여의 사회화』, 제18차 다문화가족포럼 다문화가족정책 10년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2015,
- 조희원,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 유라시아연구, 7(3): 259-274, 2010.
- 좌동훈 외,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천정웅, 『다문화사회에서의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연구』, 2013.
- 최영훈 외,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다문화』, 조사연구, 2014
- 최창욱 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최충욱,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8
- 최충욱, 『선진국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동향 및 시사점』, 경기도문화교육포럼, 2007
- 하운수, 『미국 다문화 교육의 동향과 사회과 교육과정』, 2009
- 한상철, 『청소년의 글로벌역량개발을 위한 학교 밖 활동의 중요성과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2009
- 허영식, 2016,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16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회 자료집, 경상북도 교육청, 3-17.

황진구 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1. Banting Keith & Kymlicka Will, 『Dissent』 , Multiculturalism and Welfare, 2003
2. Linda Darling-Hammond 외, 『Global Education Reform』 , Routledge, 2016
3. Nussbaum, Martha, 『Woma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Vol.105 No.42, 2000
4. Schattle, Hans, 『세계시민의 개념과 한국의 새로운 시민교육의 기회,』 글로벌 시대와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과 내용 연구개발보고서』 , 42-58. 2015
5. Sen, Amartya,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 Sen, Amartya, 『*Inequality Reexamined*』 ,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Oxford (England) : Clarendon Press. 1992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2014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
2016년 서울교육정보통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17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시행계획
2017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년 다문화학생 현황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플랜 (2017)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의 사회동향 2017; 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보고서(통계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현안 Blue Note (2015, vol4)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교육부 <http://www.moe.go.kr>

-다문화열린사회 www.multicos.c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moj.go.kr/HP/MOJ03>

-사랑의 다문화 학교 <http://lgschool.kaist.ac.kr/>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http://www.sds.hs.kr/>

-서울시교육청 <http://www.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com>

-서울온드림교육센터 <http://www.ondreamedu.com/>

-세듀넷 <http://sedunet.net>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http://www.mogef.go.kr/cs/mcfMain.do>

-예나예술종합학교 m.cafe.daum.net/yenaartschool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 www.rainbowyouth.or.kr

-인클로버 재단 <http://www.inclover.or.kr/>

-한국다문화센터 <http://www.cmck.kr/index.php>

-한울타리(다문화) <http://mcfamily.or.kr>

<http://ebook.cambridge.org>; <http://dx.doi.org/10.1017/CBO9781139177740.004>

<http://youth.kdemo.or.kr/latest/2/page/1/post/987>

Soutphommasane, T,

http://www.edu.gov.mb.ca/k12/cur/socstud/foundation_gr9/blms/9-2-4d.pdf

<http://www.hamburg.de/bsb/pressemitteilungen/10128628/2017-12-21-bsb-vhs-neues-programm>

<http://www.makehope.org/?p=3927>

<https://www.oxfam.org.uk/education/who-we-are/what-is-global-citizenship>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연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에서는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심층면접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심층면접 자료는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조례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0월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연구책임자 : 윤혁 (010-6232-4481)
공동연구원 : 신난희 (010-7236-7287)
연구보조원 : 이윤미 (010-3821-8316)
조사연구원 : 이명옥 (010-7344-5577)
이록빈 (010-2223-4356)

<기관>

○ 공통 질문

1. 기본 인적 사항 작성

2-1.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2-2.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3-1.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3-2. 다문화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4-1. 현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현재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2.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별 질문

000 기관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어떤 가치를 기초로 하나요?

기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사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모집하나요?

학생들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모집하나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00에서 학생들의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혹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 한 달 동안 학생들이 활동하거나 방문한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0기관과 관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만나거나 연락한 기관 혹은 단체를 00기관을 중심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습 혹은 참여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적성이나 진로 탐색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 자금이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부모 모임이나 자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
나요??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학생들의 학습상황과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학습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회참여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사회참여활동은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나요?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사용되나요?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기관과 학생은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이주배경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사회참여활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더 낮다 혹은 더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요?

<부모>

○ 공통 질문

1. 기본 인적 사항 작성

2-1.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2-2.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3-1.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3-2. 다문화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4-1. 현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현재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2.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별 질문

한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 어떤 계기 때문인가요?

한국에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나요?

보통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동하거나 방문한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시나요?

아이가 몇 살 인가요? 아이는 언제 출산하셨나요?

아이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셨나요?

아이는 어떤 걸 좋아했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모국에서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른 점이 있나요?

아이를 키우며 어떤 곳에서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 도움을 받나요?

아이가 다닌 학교는 어떤 학교였나요?

아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나요?

아이가 학교 다니는 시기에 엄마로서 어떤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엄마가 이주민이라는 점이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이주배경을 갖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대응했나요?

엄마로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아이가 이주배경을 갖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아이에게 (사회)참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한 사회참여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아이가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아이가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아이가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그동안 아이가 하고 싶어 했던 혹은 하게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하지 못한 활동이 있나요?

못하게 된 건 어떤 점 때문인가요?

앞으로 아이가 하길 바라는 사회참여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인가요?

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현재 변화여야 할 청소년 관련 제도나 사회 관습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시나요?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꾸면 청소년이 사회참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 공통 질문

1. 기본 인적 사항 작성

2-1.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2-2.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3-1.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3-2. 다문화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떠오르시나요?

4-1. 현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현재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2.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별 질문

보통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동하거나 방문한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겠어요?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사한 적이 있나요?

이사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학교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그동안 참여한 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사회참여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을 들 수 있을까요?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배경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부모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주배경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데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주배경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그동안 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사회참여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었나요?

못하게 된 건 어떤 점 때문인가요?

그동안 관심을 가진 사회적 이슈가 있나요?

촛불 집회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이런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하고 싶은 사회참여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인가요?

현재 변화여야 할 청소년 관련 제도나 사회 관습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시나요?

어떻게 법과 제도가 청소년이 사회참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라시나요?

1. 심층면접 개요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자료 번호	면접자명 - 1				
구술자명		성별		면담 일시	
면담자		감독자		총 횟수	
				총 시간	
공개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활용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동의				
구술 자료 수집지역			면담 장소		
구술 목적 개요					
구술 녹취 개요					
특기사항					

2. 예비 질문지1(부모용)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구분	질문 내용
초입1	기본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자녀 수·연령, 동거인 등 구술자 신상기록부 작성. 시간 및 공간 지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정부소통 경로 지도.
초입2	입국과 신분 관련 사항 :입국할 당시 비자. 현재 비자. 체류기간. 배우자 관련. 한국에 오게 된 경위. 귀화 여부 등
본론1	① 가정생활 - 부부관계. 가족관계. 경제상황. 가정환경. ② 자녀출산 - 자녀 수. 성별. 연령. 중도입국자녀 ③ 자녀양육 - 기대. 자녀의 성향. 모국에서의 교육. 방식양육 의 어려움
본론2	① 자녀의 학습 상황과 학교생활 상태. 도움을 받는 미디어 매체 ② 학교 안 참여활동과 학교 밖 참여활동 ③ 자녀의 사회참여활동 상황
본론3	① 사회참여활동의 설계와 진행과정 ② 사회참여활동으로 자녀의 내적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 ③ 사회참여활동으로 자녀의 외적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 ④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맺는 말	인터뷰에 응해준 것에 대한 인사 나눔

2. 예비 질문지2 (기관용)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구분	질문 내용
초입1	기본 사항 : 구술 실무자 관련 신상기록부 작성, 기관 실무 참여 동기, 활동 기간, 담당 업무. 시간 및 공간 지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정부소통 경로 지도 등
초입2	기관 관련 사항: 기관 관련 기초 정보. 기관 설립 동기. 연혁. 조직. 교사 및 실무자 수 및 역할. 학생 수. 학사일정. 기관 신념. 지향하는 가치 등
본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생활 - 설립 배경. 지향하는 가치. 기관지도. 학생생활. 수업 구성. 학생 진로. 재정. ② 기관운영상의 어려운 점 ③ 기관 간 네트워크와 연대. ④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교사 조직.
본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의 학습 상황과 학교생활 상태. 학습관련 활동. ② 학교 안 참여활동 유형. 활동 내용. 자발적 사회참여활동. 비자발적 사회참여활동 ③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상황
본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참여활동의 설계 및 진행과정 ② 사회참여활동으로 기관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 ③ 사회참여활동으로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변화 ④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맺는 말	인터뷰에 응해준 것에 대한 인사 나눔

2. 예비 질문지3 (학생용)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구분	질문 내용
초입1	기본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형제자매관계, 동거인 등 구술자 신상기록부 작성. 시간 및 공간 지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정부소통 경로 지도.
초입2	입국과 신분 관련 사항 :입국할 당시 비자. 현재 비자. 국적. 가족 유형. 체류기간.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및 귀화 등
본론1	① 가정생활 - 부모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래 및 이웃관계. 가정경제 상황. 난민신청. 폭력. ② 자녀출산 - 자녀 수. 성별. 연령. 중도입국자녀 ③ 자녀양육 - 기대. 자녀의 성향. 양육의 어려움
본론2	① 청소년의 학습 상황과 학교생활 상태 ② 학교 안 참여활동과 학교 밖 참여활동 ③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상황
본론3	① 사회참여활동의 설계와 진행과정 ② 사회참여활동으로 청소년의 내적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 ③ 사회참여활동으로 청소년의 외적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 ④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맺는 말	인터뷰에 응해준 것에 대한 인사 나눔

3. 구술자 신상 기록부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면담자	
				면담일시	
이름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현주소				출생지(고향)	
연락처	(자택)	(직장)		종교	
	(핸드폰)			성별	
	(이메일)				
교육	최종 학력		기타 교육 경험		
비자					
직업					
가족상황	고향: 한국: 기타지역:				
주요 상황 (중요 생애 시기 혹은 사건)	시기	상황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4. 면접 일지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구술자명	
면담자		감독자	
보조면담자		면담장소	
면담일시		회차	
파일명			
면접상황			
면접소감			
특이사항			

5. 구술 녹취문(원본)

< 녹 취 전 문 >

면접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구술자명	
면담자		감독자	
보조면담자		면담장소	
면담일시		회차	
파일명			
<p>2017년 11월 00일 구술자 0000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p> <p>면담자 : 구술자 : 상 황 :</p> <p>면담자 : 구술자 :</p>			
참고사항			

부록 2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다법개정]

서울특별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63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14.>

□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 위원으로 될 수 없다. <개정 2015.5.14.>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5.14.>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3조(표창)**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5.>
-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726호, 201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부칙 < 제5874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6호, 2017.1.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10.10.] [서울특별시조례 제5603호, 2013.10.10.,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2-3999-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문화교육 중점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03호, 201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73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삭제 <2012.7.30>

제3조 삭제 <2012.7.30>

제4조 삭제 <2012.7.30>

제5조 삭제 <2012.7.30>

제6조 삭제 <2012.7.30>

제7조 삭제 <2012.7.30>

제8조 삭제 <2012.7.30>

제9조 삭제 <2012.7.30>

제10조 삭제 <2012.7.30>

제3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4, 2017.1.5>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5.14.>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12조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네 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③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제14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제16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4장 보칙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53호, 2018.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02-2133-4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교육청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소년이 흡연, 음주, 약물, 도박, 인터넷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영역별 예방·치료 등의 사업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본조신설 2018.1.4]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그 밖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영향평가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84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3호,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53호, 2017.5.11., 제정]

구로구 (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임기) 다문화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
3.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구로구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구로구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통장 추천 및 심사를 위하여 각 동별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문화 정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단체 대표, 소속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른 의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임무) 명예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및 동향보고
- 2. 구 · 동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 4.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밖에 구 ·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53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구청장이 위촉한 명예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예통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통장의 연임에 대하여는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

부록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31호, 2014.11.20., 일부개정]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6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거주외국인”이란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2. “인권 및 처우”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2>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 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문화국장, 여성보육과장, 교육청,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개정 2011.1.1, 2014.11.2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송파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1.12.12>
-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31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록 8 세종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시행 2012.7.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1호, 2012.7.2.,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3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4명으로 하되,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비품 그 밖의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비롯한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1호,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9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11.2.] [전라남도조례 제4531호, 2017.11.2., 일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 (방과후교육복지과) 061-260-03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11.2.>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3.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 전라남도의회 의원
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7.11.2.]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삭제 <2017.11.2.>

제13조(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당해지역 다문화교육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

제14조(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교원·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부칙 <제4531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판권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 2018년 2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장경환

주관부서 : 보건복지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주무관 유선숙)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조사관 이경하, 입법조사관 김용원)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3705-1346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2-3705-1174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연구기관 : (사)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책임연구 : 윤 혁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연락처 : 02-1833-9725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091-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ISBN : 979-11-6161-111-2 93330